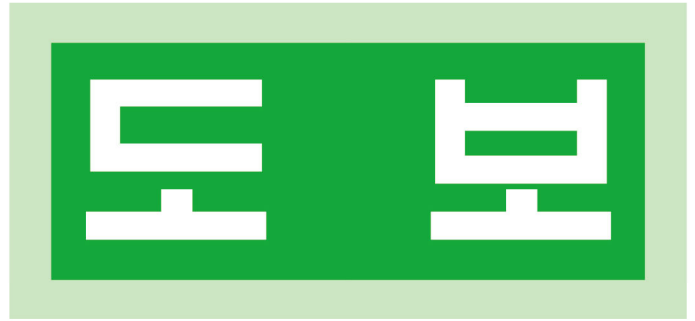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093 호

2024. 9. 27(금)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2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3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4호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5호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6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1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7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8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9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0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2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1호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3호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4호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3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6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7호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4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8호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4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9호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0호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4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1호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52

회								
람								

발행: 대 변 인 실 (TEL: 033-249-2054, FAX: 033-249-409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5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5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5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60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21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3
-------------------	-------------------------------------	----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5호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4
------------------------	------------------------------------	----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75호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7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77호	영실천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보도1교, 보도2교) 고시	74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80호	2030년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76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0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82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1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83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1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84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1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85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2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86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2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안)	87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26호	「지방도415호선 닭목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정정 공고	8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9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4

시 군 행 정

춘천시 공고 제2024-182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4호선, 소로1-48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119
--------------------	--	-----

원주시 고시 제2024-324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25
원주시 고시 제2024-32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103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32
원주시 고시 제2024-326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1차) 고시	135
원주시 고시 제2024-32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7
원주시 공고 제2024-2452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대로3-10호,중로2-113호,소로2-618호,완충녹지26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41
원주시 공고 제2024-248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2호,소로1-240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	149
강릉시 공고 제2024-1651호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소방심신수련원)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시송달 공고	160
강릉시 공고 제2024-165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릉시청)사업 공사완료 공고	163
동해시 고시 제2024-165호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북평산단제2근린공원2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65
동해시 고시 제2024-166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68
동해시 고시 제2024-167호	동해 도시관리계획(효가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69
동해시 공고 제2024-1107호	동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72
동해시 공고 제2024-1110호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74
동해시 공고 제2024-1111호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77
태백시 고시 제2024-103호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83
삼척시 고시 제2024-208호	삼척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③)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29
영월군 고시 제2024-177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32
고성군 고시 제2024-186호	고성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236
고성군 공고 제2024-1051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35)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243
양양군 공고 제2024-900호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245

조 례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2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정관) ①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 발굴·육성
2.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관리
3.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설치·운영
4.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
5. 제4호의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인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7.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8.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9.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10.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육성사업

②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2. 문해교육 사업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강원인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방지) ① 강원인재원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① 강원인재원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발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강원인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강원인재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과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강원인재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강원인재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강원인재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강원인재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강원인재원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 및 재산의 조성)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강원인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비, 시·군비의 출연 및 보조

2.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건전성 노력) ① 강원인재원은 기금 등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인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 등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강원인재원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사업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14조(출연금의 반환) 도지사는 강원인재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강원인재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강원인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운영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강원인재원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강원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을 “강원인재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관의 수행 사업 및 재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교육부가 '25년부터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3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 을 “설치·운영”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연활동시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를 “공연활동 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휘자와 안무자” 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를 “(운영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촉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원 1명과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3(회의 및 운영 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공개전형” 을 “일반공개전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당시” 를 “위촉 당시” 로, “60세이하” 를 “60세 이하” 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허락없이 자체공연외” 를 “허락 없이 자체공연 외” 로 한다.

제14조의2제4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16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 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도립예술단 구성 및 각종 용어 등을 정비·보완하고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신설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합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4호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집 목적·일자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한 기질평가 대상 개의 소유자가 타 시·도의 기질평가 결과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금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수행 시 기질평가위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7조의4(기질평가 심사수당)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심사를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5(기질평가비용부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2.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3. 제7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
4. 제9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5.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별표3]

기질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범위(제7조의3 관련)

구분	위원 1명당 지급기준
기질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1일 최대 48만원 (참석수당 포함)

※ 「지방자치인재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질평가 등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려고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5호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시령 힐링가도(이하 “힐링가도”라 한다)”를 ““미시령 힐링가도”로, “포함한다”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힐링가도”를 각각 “미시령 힐링가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힐링가도”를 “미시령 힐링가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힐링가도”를 각각 “미시령 힐링가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힐링가도”를 각각 “미시령 힐링가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설 운영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6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누리집·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조합하여 제작한 콘텐츠 등을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각종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작하거나 의정소식을 전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 관리)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3.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소지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7. 성별·인종·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누리집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SNS 서포터즈 해촉) 의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SNS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SNS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SNS 서포터즈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7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표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섭단체의 경비) 교섭단체가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8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징계)”를 “(윤리심사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위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계기준(제1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위반	가.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나.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다.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라.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마. 성폭력, 성희롱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사.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위반	가. 탈세 나. 면탈 다.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5. 겸직신고 위반	가. 겸직 불성실신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나. 겸직 미신고 및 허위신고 다.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가.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라.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9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패로”를 “상패로”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원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공적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포상의 종류 중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 포상의 제외와 포상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0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의 구성·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용역
 - 나. 현장조사
 - 다. 세미나, 포럼, 토론회 및 간담회
3. “연구활동비”란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연구용역비: 제2호가목에 소요되는 비용
 - 나. 연구활동경비: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연구회의 구성·운영) ① 의원은 누구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연구회의 장(이하 “연구회장”이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재적의원의 2분의 1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연구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등록한 날 및 제3항에 따라 연구회를 재등록한 날부터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모든 회원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경우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회의 가입 제한) 의원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연구회의 등록·재등록 등) ①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재등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

-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연구회가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재등록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연구회를 재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연구회의 활동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연구회가 등록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재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3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재등록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연구회장에 통보해야 한다.
- ⑧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회 활동기간 만료 전 연구회 활동을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활동 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가 접수된 날에 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연구활동비) ① 제5조에 따라 등록·재등록한 연구회는 의장에게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연구활동경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회장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세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회가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제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회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8항에 따라 그 해 12월 1일 전에 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신청한 연구회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연구회의 등록·재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재등록한 내용을 제5조제5항에 따라 변경 신청 없이 변경한 경우
-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 3.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연구활동 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구회의 구성·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회의 등록·재등록 및 취소
- 2. 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조정
- 3.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평가
- 4. 우수 연구회 선정
- 5. 그 밖에 연구회의 구성·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입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연구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수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포상)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등록 · [] 재등록) 신청서

- 1. 연구회의 명칭:
- 2. 연구활동의 목적:
- 3. 구성 인원수 : 명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인)	비고
회 장				
간 사				
회 원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연구회장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연구활동	주요 내용	시기	예산 (천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연구회장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변경신청서

연구회의 명칭		
등록내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등록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연구회장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활동 종료 신청서

연구회의 명칭			
회장		간사	
회원			
종료사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연구회장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용역 과제신청서

연구용역		
연구회의 명칭		
연구내용	연구명(과업명)	
	연구목적(배경)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 과업지시서(별첨)	
연구비	천원 * 원가계산서(별첨)	
결과물 활용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연구회장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 에 따라 해당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정·보완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1호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조치 의무)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의회의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잔액 발생시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정산 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의 의의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3호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6월 11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국기 보급 사업) ①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기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제4조의 국기 게양일에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 및 사업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변경된 도민의 날을 수정하고, 국기 보급 사업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4호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일제 상징물을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출장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4. 도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공공사용의 제한 또는 공공시설에서 퇴장을 명하거나 일제 상징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

7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2.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 및 공공장소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로 인해 국민 정서를 해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산물가공업, 양식어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제1항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만원 초과:”를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로, “2회”를 “2회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 초과 :”를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로, “3회”를 “3회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9개월 이내 4회”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한이자를 붙여”를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로 한다.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회 이내”를 “이내 12회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할”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로 한다.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의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6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재 하고”를 “소재하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1항1호부터 동조 동항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세입·세출예산외로”를 “세입·세출예산 외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을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지사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기금관리 및 원활한 기금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내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를 “기금관리 및 원활한 기금지원을 위하여 일부 은행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및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을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무처장” 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본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4제2항 중 “통할하며” 를 “총괄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의4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자금의 차입 등” 을 “자금의 차입”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를 “인정할 때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연도중 수시회수 되는” 을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으로, “범위안에세” 를 “범위에서” 로, “금융기관” 을 “은행” 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적격여부” 를 “적격 여부” 로 하고, 같은 조 후단 “다만, 창업 투자회사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금융기관” 을 “은행” 으로,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 을 각각 “은행”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융기관” 을 “은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기관” 을 각각 “은행” 으로 하고, 같은 항 “소속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련 업무담당” 을 “관련 업무팀장”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를 “회계연도마다” 로, “출납폐쇄후” 를 “출납 폐쇄 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를 “회계연도마다” 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불명확하고 난해한 표현이 담긴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수정하고, 인용조문 변경, 위원 직책의 현행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건의에 따른 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7호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과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연간 시행 계획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중소기업제품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 및 평가 계획
4.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에 관한 지침)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인 경우 해당 위원이 임기 중 퇴사한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8호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09호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1인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0호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대물림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물림농어업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양식업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 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
 - 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나.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물림농어업인이 강원자치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물림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교육 및 육성 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
4.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방안
5.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대물림농어업인의 선정) 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선정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선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강원자치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사업
2. 농어업 창업 자금 지원 사업
3.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신축 및 개축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기간)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을 선정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1. 적응 단계 사업
2. 정착 단계 사업
3. 소득 단계 사업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대물림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대물림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대물림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1호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민” 을 “도민, 전문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사업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등 무단방치 방지사업

제9조의 제목 “(안전교육 등)” 을 “(안전교육)”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를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5호) 중 “필요한” 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준수사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증가의 우려가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함.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과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그 유족 및 가족(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2.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신청, 지급규모, 지급절차 및 장학생의 선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취업·창업 등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심리상담 지원)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과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로 한함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장실 내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및 관리
2.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도색 등 필요한 조치
- 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용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공간
 2. 그림·사진·화분 등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물품
 - ③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화장실에 기록·비치할 수 있다.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실 개별 칸마다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 세정제
3.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및 보관함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제6조(교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및 유치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제1조)
-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 교육감의 책무(제3조)
- 화장실의 유지관리(제4조)
- 편의용품의 비치(제5조)
- 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7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연수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7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독서교육”이란 독서교육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말한다.
4.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장서 확충, 운영비, 환경개선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3.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4.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5.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6. 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
7.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8.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제5조(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시행한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해야 한다.

1.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운영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④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부서를 두는 경우 학교독서교육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과 관련한 자격증소지자 등 해당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전문화·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독서교육 지원)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등 학교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

- 학교독서교육 진흥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 개정
-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명의 변경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조치 의무) 교육감은 제2조에 따른 의회의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제2조)
- 예비지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제3조)
- 처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제4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1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 및 교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 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여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벽지 지역 학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5.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 학부모

4.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장의 통학 지원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①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4호에 따라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이용 활성화) ①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도 통학차량 공동이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

을 권고·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입법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띄어쓰기 정비 등) 일괄 수정 반영
- 통학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조문 정비 일괄 반영
- 통학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제5조)
-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0조)

규 칙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2024. 9.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21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원 중 지휘자·안무자 추천으로”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로 한다.

제4조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5조제7항”을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개회”를 “개의(開議)”로, “의결 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불명확한 조항 삭제 및 각종 용어 등을 정비·보완하여 도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자치법규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부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5호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7.26.)에 따른 주요 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도 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로 요구된 조문 수정 및 문장 정비 등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법 제정·시행에 따른 법률조항 인용과 위임사항을 신설 반영
 - － 법에서 규정한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시기를 준수함(안 제4조1항)
 - － 스마트농업육성계획 반영사항 인용함(안 제2항 각호)
 - － 육성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공표하는 방법 항 신설함(안 제4조제4항)
 - － 법에서 규정한 “스마트농업” 정의 인용함 (안 제2조제1호·제2호)
-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조문수정, 문장정비 등 개정요구 반영
 - － 조례 입법평가 요구 정비(안) 기준에 맞는 조문 및 항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정비 등 반영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 － 전 화: 033-249-3563
- － 팩 스: 033-249-4040
- － 이메일: win0316@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의 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마다 강원자치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된 육성계획은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

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u>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u>성장·발전</u>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u>시행하여야</u>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u>5년마다</u> 강원자치도 스마트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강원특별자치도 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u>스마트농업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분야에 <u>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u>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u>성장·발전</u>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u>시행해야</u> 한다. 제4조(<u>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u>)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u>매년마다</u> 강원자

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도지사는

치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된 “육성계획”은 강원 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강원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삭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	--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75호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대상문화유산

지정종별	문화유산 명칭	소 재 지	비고
도 유형문화유산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	삼척시 남양동 339-2번지	허용기준 수립

2.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3.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 도청마당 ⇒ 알림사항 또는 공고/고시 참조

4.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5. 연 락 처

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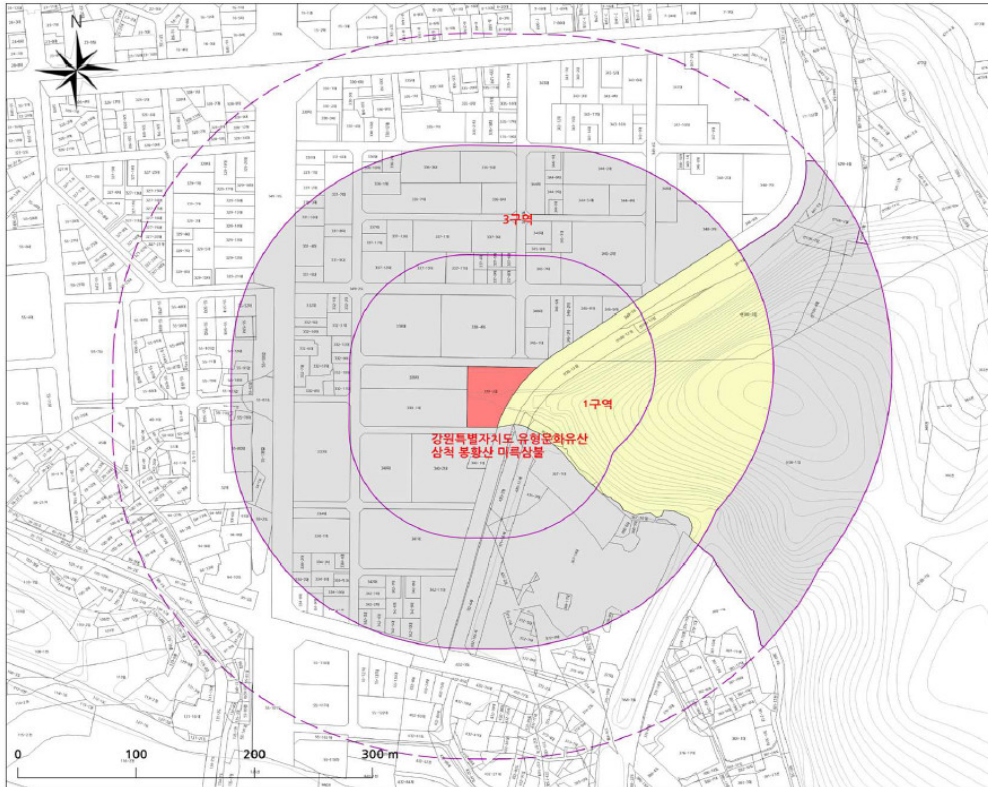
- 주 소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91 강원도청 2별관 3층
- 연락처 : 전화 033-249-3316

나. 지방자치단체(시·군)

-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유형문화유산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삼척 봉황산 미륵삼불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양동 339-2

범 례

- 도지정유산
- 100~300m
- 연속지적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3구역

축 척 (A3)

1:3,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100m 이내에 한함) ◦ 연속진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발파 등),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100m 이내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3구역에 한함) ◦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경우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77호

영실천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보도1교, 보도2교)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강원특별자치도보 발간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영실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설악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백담계곡탐방로(은선로~청룡담) 조성사업		
	개 요	시설명		점용면적(㎡)
		재 원		영구
		보도1교	L=56m, B=2.0m	187
		보도2교	L=60m, B=2.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 외 2필지 (No.5+800), (No.6+600)		
	면 적	영구 : 18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 존치시까지		

－ 실시계획인가

하천공사의 명칭		백담계곡탐방로(은선로~청룡담) 조성사업				
점 용 자 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설악동)				
공 사 위 치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 외 2필지 (보도1교 하천기본계획 측점 No.5+800), (보도2교 하천기본계획 측점 No.6+600)				
공사의 목적 및 사유		백담계곡탐방로(은선로~청룡담) 조성사업				
공 사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18개월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점용면적(㎡)		토지소유자
				영구	일시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임야	65,845,743	83	0	국(산림청)
“	산263	하천	88,552	90	0	국(환경부)
“	산62-2	임야	41,819	14	0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
합 계			30,408	187	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80호

2030년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1.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가. 2030년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취지
 -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상위계획 및 고성군의 현황을 고려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61,478,745.1	증) 54,313.0	661,533,058.1	100.00	
도시지역 합계		12,421,948.4	-	12,421,948.4	1.88	
주거지역	소 계	3,071,201.4	감) 12,865.0	3,058,336.4	0.46	
	제1종일반주거지역	1,853,329.3	감) 16,275.0	1,837,054.3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934,883.4	증) 3,410.0	938,293.4	0.14	
	제3종일반주거지역	54,076.0	-	54,076.0	0.01	
	준주거지역	228,912.7	-	228,912.7	0.03	
상업지역	소 계	394,073.0	증) 14,244.0	408,317.0	0.06	
	일반상업지역	394,073.0	증) 14,244.0	408,317.0	0.06	
공업지역	소 계	209,275.0	감) 18,098.0	191,177.0	0.03	
	일반공업지역	209,275.0	감) 18,098.0	191,177.0	0.03	
녹지지역	소 계	8,304,854.0	증) 16,719.0	8,321,573.0	1.26	
	보전녹지지역	829,251.0	-	829,251.0	0.13	
	생산녹지지역	1,120,805.0	증) 294.0	1,121,099.0	0.17	
	자연녹지지역	6,354,798.0	증) 16,425.0	6,371,223.0	0.96	
미지정		442,545.0	-	442,545.0	0.07	
비도시지역 합계		649,056,796.7	증) 54,313.0	649,111,109.7	98.12	
관리지역	소 계	138,907,007.9	증) 35,055.0	138,942,062.9	21.00	
	계획관리지역	66,868,218.5	증) 32,021.0	66,900,239.5	10.1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생산관리지역	15,407,332.6	감) 2,065.0	15,405,267.6	2.33	
보전관리지역	55,667,124.2	증) 969,167.0	56,636,291.2	8.56	
미분류지역	964,332.6	감) 964,068.0	264.6	0.00	
농림지역	315,386,464.8	증) 89,886.0	315,476,350.8	47.69	
자연환경보전지역	194,763,324.0	감) 70,628.0	194,692,696.0	29.43	

※ 기정 : 고성군 고시 제2024-144호(2024.07.26.) 고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 간성 도시지역							
1	간성읍 신안리 170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9,321	200	• 군계획시설(공공청사)가 입지한 지역으로 시설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1	거진읍 대대리 512-13 일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294	100	• 군계획시설(도로) 폭원 변경(축소)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2-2	거진읍 대대리 265-6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08	200	• 군계획시설(도로) 폭원 변경(축소)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 거진 도시지역							
3-1	거진읍 거진리 22-25 일원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283	1,300	• 국가어항구역 외 지역을 주변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거진읍 거진리 22-20 일원	일반공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410	250	• 국가어항구역 외 지역을 주변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3	거진읍 거진리 22-69 일원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444	100	• 국가어항구역 외 지역을 주변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토성 도시지역							
4	토성면 봉포리 175 일원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258	1,300	• 지방어항구역 변경에 따라 제외된 지역을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	토성면 봉포리 1-25 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97	350	• 지방어항구역 변경에 따라 편입된 지역을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6	토성면 봉포리 61-4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4,497	100	• 대순진리회 연수원 조성계획이 미진함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7	토성면 아야진리 56-30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398	200	• 개발압력 증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0	토성면 청간리 18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195	200	• 개발압력 증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 비도시지역							
11-1	토성면 청간리 98-2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6,142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토성면 청간리 249-10 일원		보전관리지역	80,368	80		
11-2	토성면 청간리 185-1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4,038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14	현내면 명호리 2-23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1,992	10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7	거진읍 용하리 286-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4,505	8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19	간성읍 교동리 58-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950	8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0	간성읍 신안리 437-7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89	10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2	간성읍 어천리 88-4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603	8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3	간성읍 어천리 512-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382	8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4	간성읍 탑동리 10-2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577	10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27-1	토성면 도원리 399-18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217	10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30	간성읍 신안리 437-5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617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32	간성읍 교동리 384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521	100	•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34	토성면 인흥리 206-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4,824	100	•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38	토성면 도원리 220-10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8	100	• 취락이 밀집하여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39	토성면 도원리 220-2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94	10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50	거진읍 산북리 134-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22	80	• 토지이용현황과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1	거진읍 송포리 산34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60	100	• 토지이용현황과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2	수동면 사천리 산4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53	80	• 주변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임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3	죽왕면 오호리 산26-1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61	100	• 주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임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55	거진읍 화포리 산3-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180	80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56	간성읍 흘리 산1-108 일원	관리지역 미분류	보전관리지역	853,188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간성읍 흘리 15-16 일원		농림지역	109,580	80		
	간성읍 흘리 11-1		계획관리지역	1,300	100		
57	거진읍 봉평리 151-37	—	농림지역	11	80	• 용도지역 미지정 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58	토성면 학야리 314-2	—	보전관리지역	32	80	• 용도지역 미지정 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59	현내면 마차진리 157-1	—	계획관리지역	1,684	100	• 용도지역 미지정 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60	죽왕면 오호리 29-47 일원	—	자연환경 보전지역	9,790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61	죽왕면 가진리 286-13 일원	—	계획관리지역	7,677	10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62	죽왕면 가진리 11-4 일원	—	자연환경 보전지역	6,332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63	죽왕면 공현진리 639-6 일원	—	계획관리지역	6,021	100	• 용도지역 미지정 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64	죽왕면 공현진리 143-48 일원	—	계획관리지역	9,972	100	• 용도지역 미지정 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65	토성면 아야진리 249-4 일원	—	계획관리지역	7,195	100	• 용도지역 미지정 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66	토성면 교암리 1-43 일원	—	계획관리지역	2,254	100	• 용도지역 미지정 된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정	
67	거진읍 거진리 산107 일원	—	자연환경 보전지역	2,527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68	죽왕면 문암진리 산31	—	자연환경 보전지역	818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69	거진읍 석문리 257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	80	•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70	토성면 원암리 산68-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395	80	• 등록전환된 불부합지의 용도지역경계를 지적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71	토성면 운봉리 522-1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80	• 용도지역경계를 지적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면적변경 없는 용도지역 선형조정	
72	토성면 용촌리 75-3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	100	• 용도지역경계를 지적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73	토성면 용촌리 75-24 일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13	80	• 용도지역경계를 지적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74	거진읍 송정리 245-3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73	80	• 용도지역경계를 지적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75	거진읍 송정리 산30-3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	80	•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토지적성평가 등급 값,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76-1	현내면 명파리 148-1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72,633	80	• 명파DMZ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76-2	현내면 명파리 177 일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3,274	80	• 명파DMZ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78	토성면 용촌리 산118-1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148	80	• 농림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경관지구

가)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송죽지구	특화 경관지구	거진읍 송죽리 123-1 일원	875,158	감) 773,190	101,968	-	-	2010.6.25	
변경	7	가진지구	특화 경관지구	죽왕면 가진리 301 일원	225,718	증) 192,908	418,626	-	-	2010.6.25	

나)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6	송죽지구	• 지구계 및 면적변경 (7호연계) - 면적 : 875,158㎡ → 101,968㎡ (감: 773,190㎡)	• 해안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안변으로 지구계 및 면적변경
변경	7	가진지구	• 지구계 및 면적변경 (6호연계) - 면적 : 225,718㎡ → 418,626㎡ (증: 192,908㎡)	• 해안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안변으로 지구계 및 면적변경

○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1	거진1지구	최고 고도지구	거진읍 거진리 340번지 일원	거진읍 거진리 340-42번지 일원	18m	24m	17,614	2000.5.31	
변경	4	토성1지구	최고 고도지구	토성면 천진리 107번지 일원	토성면 천진리 107번지 일원	20m	24m	13,607	2012.7.20	
변경	5	토성2지구	최고 고도지구	토성면 봉포리 286번지 일원	토성면 봉포리 286번지 일원	20m	24m	119,494	2012.7.20	

나)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	거진1지구	• 고도제한 완화, 위치(지번) 정정 - 높이제한 : 18m → 24m - 위치 : 거진리 340 → 거진리 340-42	• 해안경관의 통일성과 고도지구의 연속성,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높이 완화, 위치(지번) 정정
변경	4	토성1지구	• 고도제한 완화 - 높이제한 : 20m → 24m	• 해안경관의 통일성과 고도지구의 연속성,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높이 완화
변경	5	토성2지구	• 고도제한 완화 - 높이제한 : 20m → 24m	• 해안경관의 통일성과 고도지구의 연속성,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높이 완화

다.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0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강원특별자치도보 발간규정[별지 제1호 서식]

1. 상 호 : 주식회사 더원종합건설
2. 대 표 자 : 송영수
3. 등록일자 : 2024. 9. 19.
4. 등록번호 : 강원240001호
5. 자 본 금 : 350,000천원
6. 영 업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518, 2층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1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4-17호
2. 모 집 자 : 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02
4. 모집목적 : 1010 도계살리기 생존권 투쟁 24주년 기념식 및 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개최
5. 모집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6. 모집기간 : 2024. 9. 24. ~ 2024. 12. 31. ※ 사용기한 : 2024. 12. 31.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8. 모집목표액 : 50,000,000원
9. 모집방법 :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10. 모집비용 : 7,500,000원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dogye.kr/interres/main.asp>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1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4-18호
2. 모 집 자 : 영월군번영회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리1길 54
4. 모집목적 : 영월군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세미나 개최
5. 모집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6. 모집기간 : 2024. 10. 1. ~ 2024. 12. 31. ※ 사용기한 : 2024. 12. 31.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8. 모집목표액 : 20,000,000원
9. 모집방법 :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접수처
10. 모집비용 : 0원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yeongwol_ps/223570852761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1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4-19호
2. 모 집 자 : 사단법인 1010기념사업회 도계읍 번영회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02
4. 모집목적 : 도계희망 아카데미 교육 개최
5. 모집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6. 모집기간 : 2024. 9. 24. ~ 2025. 1. 31. ※ 사용기한 : 2025. 1. 31.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8. 모집목표액 : 20,000,000원
9. 모집방법 :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접수처
10. 모집비용 : 3,000,000원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dogye.kr/interres/main.asp>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2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4-20호
2. 모 집 자 :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왕건로 398
4. 모집목적 : 조선시대 법전인 은대편고 번역 및 대중전과 등
5. 모집지역 : 전국
6. 모집기간 : 2024. 9. 24. ~ 2024. 12. 31. ※ 사용기한 : 2025. 8. 31.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8. 모집목표액 : 145,000,000원
9. 모집방법 :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접수처
10. 모집비용 : 20,000,000원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및 사무실 보관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s://eundae.com>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2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4-21호
2. 모 집 자 : 강원도탄광촌문화제추진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마차중앙2길 1
4. 모집목적 : 강원도 탄광촌 문화제 행사 개최 등
5. 모집지역 : 전국
6. 모집기간 : 2024. 9. 24. ~ 2024. 12. 31. ※ 사용기한 : 2024. 12. 31.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8. 모집목표액 : 10,000,000원
9. 모집방법 :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10. 모집비용 : 0원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s://www.nanumkorea.go.kr>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26호

「지방도415호선 닭목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정정 공고

‘지방도415호선 닭목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기술·특허 공법(자재)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법 제안 개요

가. 사 업 명 : 지방도415호선 닭목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다. 위 치 :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8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6년 12월(예정)

라. 사업내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식

마. 적용대상 및 조건 : 붙임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참조

※ 공사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 여부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참가자격

공법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영구앵커”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 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발주청의 요구 시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가 가능한 업체

나. 통상실시권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리자의 동의를 득한 업체

다. 참가 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권리기간이 기술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마감된 업체

※ 제출일 이전에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협약일 및 사업기간에 따라 공법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 10. 17.(목) 13: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033-649-8633)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산대월길 38-9(방동리),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1) 기술제안서는 회사 대표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 3) 붙임3 “정량평가 제출서류” 원본 1부, 부분 1부
- 4) 붙임4 “정성평가 제출서류” 원본 1부, 부분 10부
- 5) 공법설명서(공법 프리젠테이션 자료<5분 이내>) 원본 1부, 부분 10부
 - 제출서류 4), 5)의 부분 10부는 회사명 미기재(회사명, 회사주소, 워터마크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사항 미기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재시에는 2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6) 제출서류 1) ~ 5)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USB 1개

4.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종합평가점수(100점)

※ 붙임 2 “공법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가점(지역가점 3점 또는 5점), 감점(사전접촉 10점) 사항이 있으며, 가점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본다.

나. 세부평가기준

- 1) 1차(정량적) 평가 : 공사비,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를 고려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하며, 제안서가 4개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1차 평가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2차평가를 실시(2차 평가 대상 업체는 개별 통보)
 - ※ 제안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안 업체 모두 2차 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며, 공고 종료 결과 제안 업체가 1개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도 1개사인 경우 사업 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공법을 선정
- 2) 2차(정성적)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공법의 일반사항, 안전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3)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공법선정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공법선정위원회)의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정성적 평가의 득점도 동점일 경우에는 제안금액이 낮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 ※ 평가서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분야 ‘0’ 점 처리

5. 가격견적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붙임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나. 견적 산출시 현장여건을 참조(붙임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참조)

※ 견적 산출시 제시된 물량은 실 설계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견적금액(설계가)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금액(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작성

라. 견적기준

- 제안금액은 2024년 하반기 노임단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수량 및 규격별 금액은 가격견적서에 반드시 명기
- ※ 공법 선정(낙찰) 후 심의가격(협약가격)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 등 가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 공법 선정 취소

마. 가격견적서 작성 기준

- 붙임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 명기된 설치 조건 기준으로 작성
-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기준, 물가자료, 견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바. 제출된 견적금액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증액 불가

사. 제출된 견적금액은 현장여건 변동 및 일상감사 등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최종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 등은 가격견적 시 제출한 금액으로 설계내역서(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6.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4. 10월 중

나. 개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2층 회의실

다. 심사위원 : 7 ~ 10명

라. 심사방법 : 사전에 추첨한 고유번호 순서로 업체별 PT 발표 후 기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 (발표 5분 이내)

마. 결과발표 : 공법선정위원회 완료 후 최종결과 통보

※ PT발표 및 질의·응답(각 5분 이내) *시간 만료 시 타종 후 중지

7. 질의 및 응답

가.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전자우편(msjeong112@korea.kr)으로 2024. 10. 7.(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2024. 10. 10.(목)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1)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작성안내서,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 2)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3)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6) 본 제안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 7) 제안 관련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 8)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 하며,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특허 전용 실시권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 9)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 10) 최종 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해당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우리 사업소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1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2)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제안(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3) 최종 선정된 공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 사업소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14)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5)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지방도415호선 닭목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사업소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 여건에 따라 공법선정 심의위원 평가를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7) 본 공고와 관련된 일정 등은 우리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8)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 19) 제안 금액은 향후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단가 검토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 설계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안사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기준 변경,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합니다.
- 21)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공법(특허)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22) 우리 사업소와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간 상호 이견이 발생되거나 사정에 의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3)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 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4)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25) 이외 공지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붙임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1부.
 2. 공법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1부.
 3. 제안사 제출서류 1부. 끝.

**「지방도 415호선 닭목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기술·특허 공법(자재)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2024. 9.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I. 신기술 · 특허 공법(자재) 기술제안 과업개요

1. 사업현황

○ 목 적

- 본 과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8번지 일원의 비탈면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도로이용객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반사항을 정밀조사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적합한 공법을 수립 계획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도 415호선 닭목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2-8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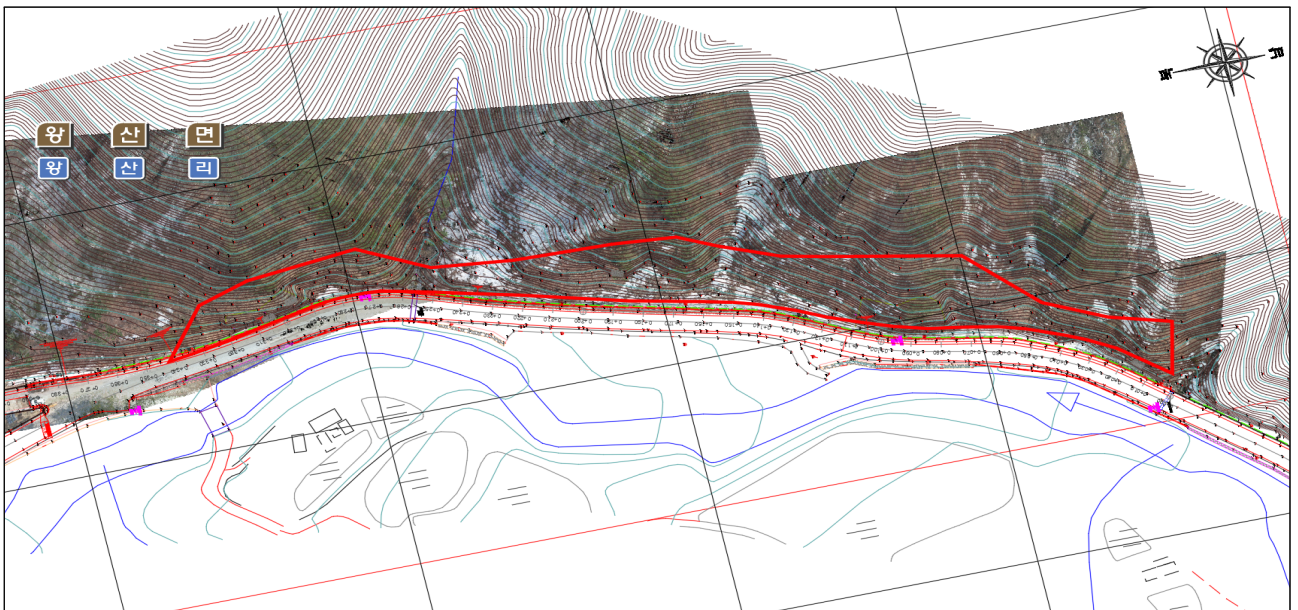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규 모 : 영구앵커 155공, 설계인장력 385kN이상
- 추정금액 : 437백만원
- 공사예정기간 : 2025년 1월 ~ 2026년 12월(예정)

○ 위치도



○ 전경사진



○ 전경사진



II. 신기술 · 특허 공법(자재) 기술제안 기준

1 제안범위

○ 제 안 명 : 영구앵커 신기술 · 특정공법(자재) 기술제안

구분	특정공법	제 원	규모	추정금액	비 고
비탈면 안정공	영구앵커, (127mm 천공)	L=11.0M, ($\phi 12.7 \times 4EA$) 정/자/여 (4/6/1 M)	155공	437(백만원)	설계인장력 385 k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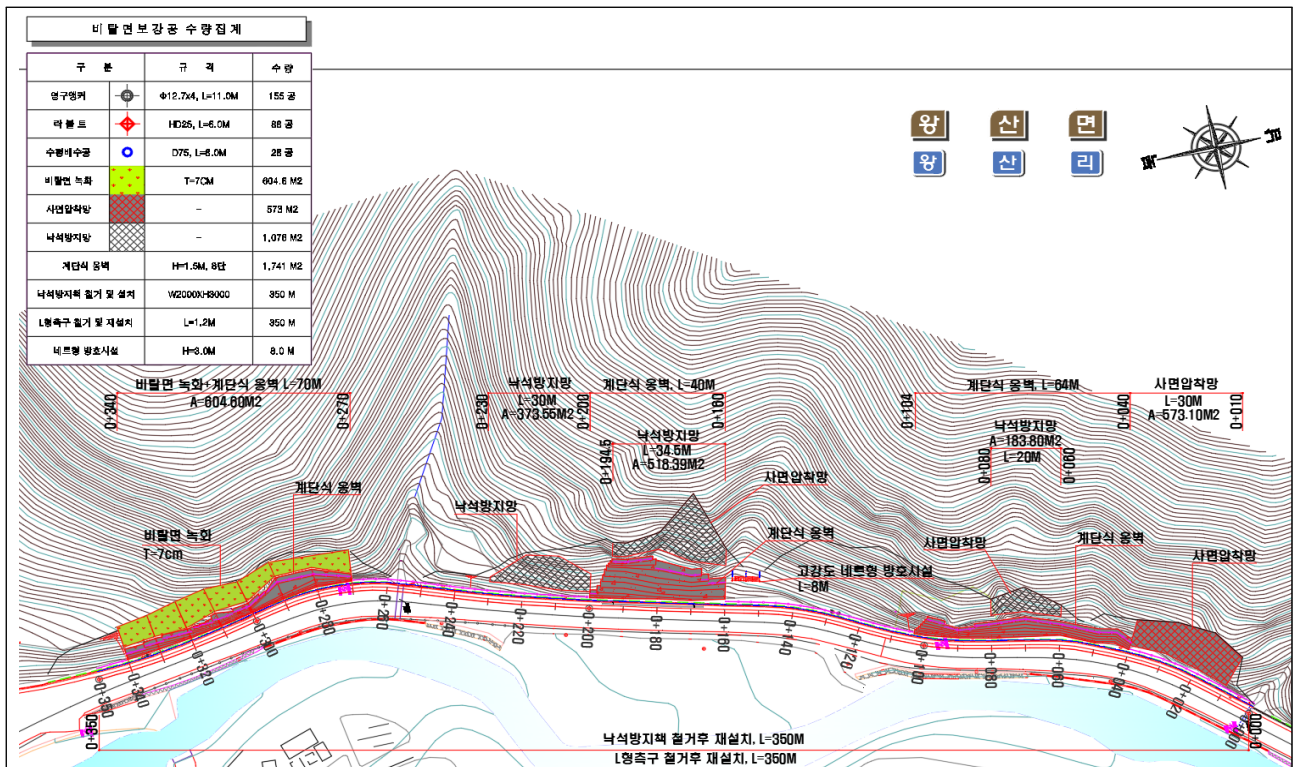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심의,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특정공법 추정금액(기초금액)은 제경비가 포함된 총공사비임

2. 현황도 및 단면도

○ 영구앵커 적용구간

－ 계획평면도



STA. 0+40~104	STA. 0+160~200	STA. 0+270~340	비고 (155공)
63공	29공	63공	계단식옹벽 설치구간

3. 특정공법 제안공사비 산출기준

가. 특정공법 제안공사비는 설계가로 산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안금액은 2024년 하반기 노임단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비는 비탈면안정공 중 영구앵커 설치에 따른 공종을 적용합니다.

라. “다” 항에 대한 영구앵커에 대한 일체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시공단계에서 미반영이 확인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공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금액(100%)으로 작성합니다.[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내역서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를 반드시 제출]

바.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사.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아.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2**공법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예시)	배점	A사	B사	C사	D사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 · 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10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80점)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20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 · 내진 · 내화 · 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20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20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20				
가 점		- 도내업체 신기술 · 특허권자 : 5점 - 도내업체 전용실시권자 : 3점	5				
감 점		- 선정위원 사전 접촉	△10				

* 평가점수의 합이 가점에 따라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본다.

□ 공사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10.0
		B. 90% 이상 95% 미만	9.0
		C. 95% 이상 100% 미만	8.0
		D. 100% 이상 105% 미만	7.0
		E. 105% 이상	6.0

-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산출방법
- 제안사의 제안금액 중 최대 최소 공사금액을 제외한 합계 평균금액을 공법제안 평균공사 금액이라 한다.
단,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제외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CCC+ 미만	C 미만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미만	제외

□ 정성평가 평가기준

1. 점수는 배점에 대하여 수(100%), 우(90%), 미(80%), 양(70%)으로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1					2	1	1		
3	1	1	1		4	1	1	1	1

2.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붙임 3**정량평가 제출서류****공법 정량 평가 요청서**

○ 공사명 :

○ 특허·신기술명 :

○ 특허·신기술 내용

구분	등록번호	취득일	보호기간 만료일	지역업체여부
특허				(예시) 강원-특허 (예시) 강원-전용
신기술				(예시) 강원-신기술

○ 제안금액 : 000,000,000원 ※ 순공사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

○ 경영상태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 000등급 ※ (예시) AAA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000등급 ※ (예시) B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000등급 ※ (예시) AAA 등급

붙임 1. 특정 공법(자재) 제안금액 내역서 1부.

2. 특허증 또는 신기술인증서 1부.

3. 특허등록원부 1부.

4. 제안사 법인 등기 사본.

5. 제안사 건설업면허 사본 1부.

6. 경영상태 등급 확인서 1부.

※ 공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주식회사 00건설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성명 : 인)

○ 공사명 :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엑셀파일 별도 제출

붙임 4

정성평가 제출서류

기 술 제 안 서

공 사 명 :

제 안 명 : 특허 제00-00000000호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안 반드시 명기)

귀 소의 특정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운영방안에 따라 작성한 공법·자재
심의 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심의 요청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기술보유자는 설계완료
전에 귀 청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 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1. 특정 공법(자재) 제안서 1부.
2. 특정 공법(자재) 정량평가 요청서 1부.
3. 참가위임장, 각서 및 서약서, 특허·신기술 사용동의서 각 1부. 끝.

2024. 00. 00.

특허·신기술 보유자 : (인)

제안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귀하

특정 공법(자재) 제안 참가 위임장(필요 시)

- 공 사 명 :
○ 특허·신기술명 :
○ 위임사항

구 분	본인(위임하는자)	대리인(위임받는자)
성 명	제안사 대표이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임사항	당사는 귀 기관에서에서 실시하는 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설명회 참석 및 공법선정위원회 제안 설명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및 전용실시권자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4. 00. 00.

신기술·특허 보유자 : (인)

제안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귀하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공 사 명 :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소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00.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귀하

특정 공법(자재) 제안서

구 분		특허·신기술 약칭 기재
공법 (자재) 일반	특허·신기술의 명칭 (특허·신기술 번호)	※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서의 명칭 기재
	공법(자재) 개요도(이미지)	
	공법(자재) 개요 및 특장점	※ 공법(자재)의 일반적인 개요 등을 기재
정성 평가 항목	시 공 성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과 적합 정도 · 공사기간의 적정성
	안 전 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생애주기 측면의 경제성
가점	지역업체 여부	
	신기술 여부	건설신기술 제○○○○호
참고 사항	실적 현황(최근3년)	건 백만원,

※ 본 제안서는 선정위원회에게 비교표로 제공되며 제안사별 상호검증 시 사용되는 서식이므로 변경금지

특정 공법(자재) 참여 각서

○ 공사명 :

당사는 귀 소에 특정 공법(자재) 제안서를 사실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당행위와 같은 불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선정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귀 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감점조치, 참여제한 및 선정된 공법 취소 등의 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평가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상호명

(제안자) 대표자

(인)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귀하

특정 공법(자재) 제안 서약서

○ 공사명 :

당 사는 귀소의 특정공법(자재) 제안서 제출에 있어 제안안내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처분되어지는 어떠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제시한 제안금액 보다 실제 시공 중에 불임 내역서 공정 외 추가 공정(장비)으로 증액(단, 단순물량 증가 및 E/S는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차후 공법 선정 관련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상호명

(제안자) 대표자

(인)

주 소

붙임 : 1.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1부.

2. 특정 공법(자재) 제안금액 내역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귀하

관리 번호	
----------	--

기 술 제 안 서

0000000000000000공법 선정

2024. .

(주)○○○○○○ 대표이사 ○○○

구 분	(주)00000(대표사)	비 고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제안서 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관리 번호	
----------	--

기 술 제 안 서

0000000000000000공법 선정

2024. .

☐ 제품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시공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9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시기구의 조속한 종료에 따른 3국 체제의 업무기능별 일원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추진 및 현장 중심·학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의 조기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3조의2)

- 미래학력담당관 종료 및 정책국에 과 단위 설치
- 미래학교추진단 종료 및 행정국에 과 단위 설치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소관 사무 조정(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 다문화교육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정책 기능 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e-mail: truelee7@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진수(전화 033-258-51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을 “외국어교육”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체험활동, 다문화교육”을 “체험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본청에 미래학력담당관과 미래학교추진단을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둔다. ② 한시기구의 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16조(설치) ①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u>외국어</u> 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보편적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둔다. ② (생략) 제1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u>외국어 체험활동</u>, <u>다문화교육</u>, 세계시민교육 2. ~ 5. (생략)	<삭제>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16조(설치) ① ----- <u>외국어교육</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 ----- -----. 1. ----- <u>체험활동</u>----- ----- 2.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 ④ 과(本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 (00)		제0조 (00)		○ —

※ 참고자료:

시 군 행 정

춘천시 공고 제2024-182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4호선, 소로1-48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9-2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4호선, 소로1-4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춘천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춘 천 시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9-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1-4호선, 소로1-48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 소로1-48호선) 개설공사
-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9,654㎡(도로 9,365㎡, 사면 289㎡)
 - 규 모
 - 중로1- 4호선 : L=205m, B=20m
 - 소로1-48호선 : L=482m, B=9~13.5m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 민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 07.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9. 27. ~ 2024. 10. 18.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417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1) 중로1-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만천리	782-1	전	10	1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만천리	783-1	답	770	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만천리	905-1	구거	195	25	국 (국토교통부)					
4	장학리	174-3	답	1,391	1	권순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47,104동 1101호(퇴계동,뜨란채아파트)				
5	장학리	174-4	도로	657	41	춘천시					
6	장학리	174-5	답	16	13	국 (재정경제원)					
7	장학리	174-9	답	401	332	박충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862-1				
8	장학리	175-1	답	773	56	강대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석주로 231,106동 1201호(춘천두산위브아파트)				
						구교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석주로 231,106동 1201호(춘천두산위브아파트)				
						구문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 바동 833호(안암동3가, 대광아파트)				
						구주형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21, 904동 508호(공릉동, 청솔아파트)				
						경기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159				
						함대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골길 11-1 (후평동)				
9	장학리	175-6	답	1,798	1,701	춘천시					
						경기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159				
						함대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골길 11-1 (후평동)				
10	장학리	176-5	전	7	6	춘천시					
11	장학리	178-3	전	1,228	1,220	춘천시					
12	장학리	894-3	답	26	24	황윤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722-9				
13	장학리	895-17	구거	48	47	춘천시					
14	장학리	895-21	도로	33	32	춘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5	장학리	928-8	구거	47	47	춘천시					
16	장학리	928-9	구거	1,520	105	국 (국토교통부)					
17	장학리	929-4	도로	251	132	국 (국토교통부)					
18	장학리	929-12	도로	31	31	춘천시					
19	장학리	952-1	구거	797	190	국 (국토교통부)					
20	장학리	953-1	도로	325	272	국 (국토교통부)					
계				10,324	4,286						

2) 소로1-4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만천리	779-2	도로	13	1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	만천리	779-3	도로	344	242	춘천시					
3	만천리	779-4	대	2	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	만천리	779-5	하천	34	34	강원특별자치도					
5	만천리	779-7	대	87	8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	만천리	779-9	전	72	7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7	만천리	779-11	하천	162	116	강원특별자치도					
8	만천리	779-12	하천	120	120	강원특별자치도					
9	만천리	779-15	하천	64	64	강원특별자치도					
10	만천리	779-16	하천	64	64	강원특별자치도					
11	만천리	779-17	하천	117	117	강원특별자치도					
12	만천리	779-18	도로	1	1	강원특별자치도					
13	만천리	779-21	전	80	80	이혜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17-44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최문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17-46				
14	만천리	779-22	전	317	34	이혜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17-44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최문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17-46				
15	만천리	779-23	전	85	8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	만천리	788-7	답	293	221	강원특별자치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7	만천리	788-9	답	481	481	이혜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동면농협 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72	근저당권	
						안만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18	만천리	788-10	답	21	4	이혜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동면농협 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72	근저당권 지상권	
19	만천리	788-12	답	42	42	이혜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동면농협 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72	근저당권	
						안만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20	만천리	788-13	답	28	28	이혜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동면농협 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72	근저당권	
						안만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21	만천리	789-1	대	461	1	이혜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48-1, 301호 (효자동)	동면농협 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72	근저당권 지상권	
22	만천리	789-7	전	1,650	15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3	만천리	789-8	전	223	22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	만천리	789-9	하천	267	92	강원특별자치도					
25	만천리	789-18	전	6	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	만천리	789-19	하천	69	69	강원특별자치도					
27	만천리	789-20	하천	219	210	강원특별자치도					
28	만천리	828-1	답	104	9	사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95-4(후평동)	초계정씨 참의공파 통정공 종친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691-4	가처분	
						정기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1길 40, 302동 1509호(우두동, 춘천우두엘에이치 천년나무3단지아파트)				
						정미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25, 302호(계산동, 화이트빌)				
						정인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1가 72				
						정인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237				
						정중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38번길 4, 201호(하대원동)				
						정태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44, 7층 (월계동)				
						정호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245				
29	만천리	905	하천	71,408	899	국 (국토교통부)					
30	만천리	905-2	구거	71	27	국 (국토교통부)					
31	만천리	905-3	하천	1,194	268	국 (국토교통부)					
32	만천리	905-43	하천	511	343	국 (국토교통부)					
33	만천리	905-44	하천	83	21	국 (국토교통부)					
34	만천리	905-65	하천	13	13	국 (환경부)					
35	만천리	905-66	하천	488	195	국 (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36	만천리	905-68	구거	28	27	국 (국토교통부)					
37	만천리	905-75	하천	267	244	국 (국토교통부)					
38	만천리	906	구거	282	10	국 (국토교통부)					
39	만천리	906-1	구거	38	35	국 (국토교통부)					
40	만천리	911-4	도로	375	1	국 (국토교통부)					
41	만천리	978	학교	14,003.1	11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42	만천리	982	도로	145.7	143	춘천시					
43	만천리	988	제방	53.1	44	춘천시					
44	만천리	180-27	구거	2,502	21	국 (국토교통부)					
계				96,887.9	5,079						

3) 구역외 사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만천리	905-66	하천	488	79	국 (기획재정부)					
2	장학리	174-4	도로	657	16	춘천시					
3	장학리	174-5	답	16	3	국 (재정경제원)					
4	장학리	176-4	전	853	36	구주형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21, 904동 508호(공릉동,청솔아파트)	춘천원예 농업협동 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39 (사농동)	근저당권 지상권	
						구문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 바동 833호(안암동3가,대광아파트)				
5	장학리	176-5	전	7	1	춘천시					
6	장학리	178-3	전	1,228	8	춘천시					
7	장학리	178-4	주차장	1,589	94	구교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석주로 231,106동 1201호 (춘천두산위브아파트)				
						구문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 바동 833호(안암동3가,대광아파트)				
						구주형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21, 904동 508호(공릉동,청솔아파트)				
8	장학리	952-1	구거	797	18	국 (국토교통부)					
9	장학리	953-1	도로	325	34	국 (국토교통부)					
계				5,960	289						

나. 지장물조사

1) 중로1-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장학리	175-6	수목	소나무,은행나무만 송,옥향나무	50주	구교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석주로 231,106동 1201호 (춘천두산위브아파트)				
			웬스	H=1.1m(철재)	17m						

2) 소로1-4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만천리	788-12	안전난간 데크	H=1.0m(나무) B=1.5m(나무)	14.5m 5.7㎡	안만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삭주로 224				
2	만천리	779-11	안내표지판	철재	1식	천주교 춘천교구 만천성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건일길 34-21				
3	만천리	779-22	안내표지판	철재	1식	천주교 춘천교구 만천성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건일길 34-21				
4	만천리	978	수목 안전난간	느티나무, 회양목 주목, 철쭉, 병꽃 H=1.2m(철재)	81주 30m	강원특별 자치도 (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비 고
도 로	중로1-4	연장: 205m, 폭원: 20m	도시계획도로
도 로	소로1-48	연장: 482m, 폭원: 9~13.5m	도시계획도로

원주시 고시 제2024-324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4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원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봉산동 3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4호)사업

나. 명칭: 원주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결정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체육시설3호	67,837㎡	65,024㎡	2,813㎡	도로 중복 결정구간 추후 전용예정
체육시설4호	65,006㎡	61,087㎡	3,9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원주시장(체육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4.9.27.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체육시설3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	원주시 봉산동	274-1	답	3,597	27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	원주시 봉산동	275	답	1,205	1,20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	원주시 봉산동	275-1	답	1,479	29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	원주시 봉산동	276	답	2,435	2,43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	원주시 봉산동	276-1	답	752	36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	원주시 봉산동	277	답	2,770	2,77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7	원주시 봉산동	278-2	임	405	40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8	원주시 봉산동	278-3	임	1,216	1,21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9	원주시 봉산동	278-4	임	1,169	1,16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0	원주시 봉산동	278-5	임	1,063	1,06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1	원주시 봉산동	278-6	임	1,016	1,01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2	원주시 봉산동	278-7	임	604	60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3	원주시 봉산동	278-8	임	668	66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4	원주시 봉산동	278-9	임	958	95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5	원주시 봉산동	278-10	임	1,035	1,035	광명시 광명동 200-6 한진아파트 110-1503	김숙희				661/ 1,03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74/ 1,035
16	원주시 봉산동	278-11	임	1,351	1,35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7	원주시 봉산동	278-12	임	988	98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8	원주시 봉산동	278-13	임	907	907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9	원주시 봉산동	278-14	임	940	94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0	원주시 봉산동	278-15	임	995	99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1	원주시 봉산동	278-16	임	1,136	1,13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2	원주시 봉산동	278-17	임	1,088	1,08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3	원주시 봉산동	278-18	임	1,170	1,17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4	원주시 봉산동	278-19	임	712	71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5	원주시 봉산동	278-20	임	1,089	1,089	원주시 시청로1	원주시				

						(무실동)					
26	원주시 봉산동	278-21	임	1,007	1,007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7	원주시 봉산동	278-22	임	971	97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8	원주시 봉산동	278-23	임	1,018	1,01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9	원주시 봉산동	278-24	임	1,093	1,09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0	원주시 봉산동	278-25	임	974	97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1	원주시 봉산동	278-26	임	792	79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2	원주시 봉산동	278-27	임	1,576	1,57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3	원주시 봉산동	278-28	임	1,610	1,610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3-80 종원빌라 8-202	지정환				331/ 1,61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279/ 1,610
34	원주시 봉산동	278-29	임	271	27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5	원주시 봉산동	299-2	답	109	10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6	원주시 봉산동	300	답	1,983	1,98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7	원주시 봉산동	301	전	466	46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8	원주시 봉산동	302	답	3,980	3,98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9	원주시 봉산동	302-1	답	1,223	1,22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0	원주시 봉산동	303	답	3,593	3,59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1	원주시 봉산동	304	전	111	11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2	원주시 봉산동	691-1	답	416	41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3	원주시 봉산동	691-3	답	3,313	54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4	원주시 봉산동	692-7	답	3,418	14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5	원주시 봉산동	693-1	전	794	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6	원주시 봉산동	1154	구	48,994	1,85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 식품부				
47	원주시 봉산동	산83-1	임	6,093	6,09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8	원주시 봉산동	산83-9	임	2,291	2,29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9	원주시 봉산동	산83-42	임	496	30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0	원주시 봉산동	산83-44	임	7,992	99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1	원주시 봉산동	산87-2	임	1,253	1,25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2	원주시 봉산동	산87-4	임	4,574	2,85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3	원주시 봉산동	산87-9	임	543	54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4	원주시 봉산동	산89-5	임	1,109	1,10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 토지조서[체육시설4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	원주시 봉산동	278-36	임	33	3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	원주시 봉산동	298	답	184	18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	원주시 봉산동	299-1	천	123	123		-				미등기
4	원주시 봉산동	299-3	천	15	15		-				미등기
5	원주시 봉산동	299-6	답	1,937	1,937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	원주시 봉산동	306-1	유	7,373	7,373		-				미등기
7	원주시 봉산동	306-2	답	95	9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8	원주시 봉산동	306-3	답	279	24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9	원주시 봉산동	306-4	유	82	82		-				미등기
10	원주시 봉산동	307	전	102	9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1	원주시 봉산동	308-1	임	3,052	3,05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2	원주시 봉산동	308-2	도	126	126	세종특별자치시 도읍6로 11	국토교통부				
13	원주시 봉산동	308-3	임	33	3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4	원주시 봉산동	308-7	임	184	15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5	원주시 봉산동	309-1	유	1,451	1,45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 식품부				
16	원주시 봉산동	309-2	답	965	96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7	원주시 봉산동	310	유	241	24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 식품부				
18	원주시 봉산동	311-1	대	724	72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19	원주시 봉산동	311-2	도	56	5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0	원주시 봉산동	312	대	545	54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1	원주시 봉산동	312-1	답	658	65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22	원주시 봉산동	313-2	도	139	13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3	원주시 봉산동	313-3	전	338	33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4	원주시 봉산동	315-3	답	379	37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5	원주시 봉산동	315-2	도	103	10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6	원주시 봉산동	316-24	전	50	5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7	원주시 봉산동	316-25	임	275	27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8	원주시 봉산동	317-1	전	473	47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29	원주시 봉산동	317-2	도	10	1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0	원주시 봉산동	318-1	임	13,100	13,10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1	원주시 봉산동	318-2	임	701	70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2	원주시 봉산동	318-4	도	17	17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3	원주시 봉산동	318-5	도	20	2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4	원주시 봉산동	319-1	전	3,544	3,54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5	원주시 봉산동	319-2	도	119	119	원주시 봉산동 311	김남우				
36	원주시 봉산동	320	전	389	38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7	원주시 봉산동	320-1	도	84	5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8	원주시 봉산동	322-1	도	347	14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39	원주시 봉산동	323	전	232	23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0	원주시 봉산동	323-1	도	7	7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1	원주시 봉산동	323-2	도	16	1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2	원주시 봉산동	324-7	도	185	40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3	원주시 봉산동	329-1	도	390	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읍6로 11	국토교통부				
44	원주시 봉산동	337-3	답	763	76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5	원주시 봉산동	337-2	도	125	12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46	원주시 봉산동	338	대	595	5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47	원주시 봉산동	339-3	전	621	62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8	원주시 봉산동	339-2	도	53	5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49	원주시 봉산동	340-1	전	434	43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0	원주시 봉산동	340-2	도	63	6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1	원주시 봉산동	340-3	전	197	14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2	원주시 봉산동	341-1	전	491	49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3	원주시 봉산동	341-2	도	93	9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4	원주시 봉산동	341-3	전	805	37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5	원주시 봉산동	344-3	전	163	16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6	원주시 봉산동	344-2	도	69	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7	원주시 봉산동	677	답	162	16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8	원주시 봉산동	677-1	답	4,479	15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59	원주시 봉산동	690-1	답	143	143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0	원주시 봉산동	690-3	유	363	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디동 203호	리영선				
61	원주시 봉산동	690-4	답	401	376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2	원주시 봉산동	690-5	답	1,492	387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3	원주시 봉산동	690-6	유	17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디동 203호	리영선				
64	원주시 봉산동	690-7	답	282	282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5	원주시 봉산동	1154	구	48,994	2,69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 식품부				
66	원주시 봉산동	1154-1	구	2,494	29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 식품부				
67	원주시 봉산동	1154-2	답	19	19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8	원주시 봉산동	1154-89	답	206	7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69	원주시 봉산동	1161	도	2,302	1,38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70	원주시 봉산동	산83-27	임	151	13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71	원주시 봉산동	산83-48	임	3,042	44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72	원주시 봉산동	산89-4	임	1	1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73	원주시 봉산동	산103-1	도	27	27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74	원주시 봉산동	산103-2	도	5	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75	원주시 봉산동	산103-3	도	15	5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76	원주시 봉산동	산103-6	임	2,858	2,85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77	원주시 봉산동	산104-1	임	9,348	9,348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				

원주시 고시 제2024-325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103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반곡동 1455-1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103호)사업

○ 명칭: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3호)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골드 대표이사 석대현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48, 4층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금회시행	비고
중로1-103호	B=22m, L=170m, A=4,30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4. 6. 24.(접수일)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반곡동 1455-1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103호)사업

○ 명칭: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3호)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골드 대표이사 석대현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48, 4층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금회시행	비고
중로1-103호	B=22m, L=170m, A=4,3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중로1-103호)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원주시 반곡동	1455-110	도	3	3	공유지	원주시	-	-	-	
2	원주시 반곡동	1455-85	도	43	43	공유지	원주시	-	-	-	
3	원주시 반곡동	1474-1	도	31	31	공유지	원주시	-	-	-	
4	원주시 반곡동	1798-13	도	1,308	1,308	공유지	원주시	-	-	-	
5	원주시 반곡동	1798-12	도	742	742	공유지	원주시	-	-	-	
6	원주시 반곡동	1798	천	278	278	-	미등기	-	-	-	
7	원주시 반곡동	1797-1	천	489	489	공유지	원주시	-	-	-	
8	원주시 반곡동	1798-25	제	4	4	공유지	원주시	-	-	-	
9	원주시 반곡동	1797	제	53	53	공유지	원주시	-	-	-	
10	원주시 반곡동	1455-22	제	164	103	공유지	강원도	-	-	-	
11	원주시 반곡동	1455-20	천	1,114	278	공유지	강원도	-	-	-	
12	원주시 반곡동	1476-1	도	52	52	국유지	국토부	-	-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3	원주시 반곡동	1796	천	350	228	공유지	원주시	-	-	-	
14	원주시 반곡동	1795-4	도	459	161	공유지	원주시	-	-	-	
15	원주시 반곡동	1801	도	4,979	73	공유지	원주시	-	-	-	
16	원주시 반곡동	1474-8	도	30	30	공유지	원주시	-	-	-	
17	원주시 반곡동	1475	잡	26	26	공유지	강원도	-	-	-	
18	원주시 반곡동	1455-120	채	5	5	공유지	강원도	-	-	-	
19	원주시 반곡동	1798-4	공	1,144	329	공유지	원주시	-	-	-	
20	원주시 반곡동	1798-24	채	298	64	공유지	원주시	-	-	-	
21	원주시 반곡동	1798-3	채	394	7	공유지	원주시	-	-	-	
합 계				11,966	4,307						

원주시 고시 제2024-326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1차)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890-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 명칭: 단구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1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폭원	연장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중로3-116	12.0~21.0m	851m	B=12.0~21.0m, L=253m	B=12m, L=51.5m	B=12.0~21.0m, L=54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보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김호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서관, 2층 209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의 신청기일: 2024.6.24 (접수일)

☐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890-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116호)사업

○ 명칭: 단구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1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폭원	연장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중로3-116	12.0~21.0m	851m	B=12.0~21.0m, L=253m	B=12m, L=51.5m	B=12.0~21.0m, L=54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보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김호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서관, 2층 209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4.1.19. ~ 2026.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도로(중로3-116호)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일체

[붙임] 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1	원주시단구동	890-12	대	199	199	박영기	원주시 큰숫둔길 4(관설동)	문막농업협동조합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19	근저당권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2	단구동	939-6	답	2,420	79	김현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00, 1005동 504호(구미동, 무지개마을)			
3	단구동	1444-5	도	145	145	국(건설부)				
4	단구동	939-31	답	74	74	송진화	원주시 개운2길 50-2(개운동)	원주 세무서	원주시 복원로 2325	근저당권
5	단구동	889-2	답	126	126	대한예수교장로 회원남교회	원주시 단구동 139-38			

원주시 고시 제2024-32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원 주 시 장

가. 결정취지 : 산업11용지 내 가감속차도로 포함된 중로1-911호선에 대하여 당초 선형으로 조정하기 위해 금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106-2번지 일원(금회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0	원주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원	5,281,179.3	-	5,281,179.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용도지역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정	289 (291)	45,708 (47,900)	730,066.4 (777,847.4)	100 (101)	21,342 (22,424)	348,195.2 (385,595.2)	47	12,994	247,740.5	142 (143)	11,372 (12,482)	134,130.7 (144,511.7)	0는 구역외 포함
	변경	289 (291)	45,708 (47,900)	729,915.8 (777,696.8)	100 (101)	21,342 (22,424)	348,044.6 (385,444.6)	47	12,994	247,740.5	142 (143)	11,372 (12,482)	134,130.7 (144,511.7)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중 로	기정	82 (83)	18,913 (19,995)	367,453.1 (404,853.1)	21 (22)	8,894 (9,976)	218,131.0 (255,531.0)	39	7,710	120,843.9	22	2,309	28,478.2	0는 구역외 포함
	변경	82 (83)	18,913 (19,995)	367,302.5 (404,702.5)	21 (22)	8,894 (9,976)	217,980.4 (255,380.4)	39	7,710	120,843.9	22	2,309	28,478.2	

※ 변경부분만 기재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능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911	20~23	집산	480	신평리 1103	가곡리 378-14	일반도로		2009.10.16	
변경	중로	1	911	20	집산	480	신평리 1103	가곡리 378-14	일반도로			선형 및 면적변경

※ 변경부분만 기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911	중로1-911	- 도로 선형변경 및 면적, 폭원감소 - 면적 : 감) 150.6㎡ - 폭원 : 20~23m → 20m	산업용지 내(산업11 I)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당초 가감속차로 선형으로 조정하고자 도로 선형변경 및 면적, 폭원 감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지식산업용지(변경)

(가) 산업용지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산업1	I	31,989.1	-1	31,989.1	· 분할 및 합병 가능
산업2	I	49,234.5	-1	22,838.2	
			-2	10,595.6	
			-3	7,584.1	
			-4	4,138.9	
			-5	4,077.7	
산업3	I	31,713.6	-1	15,184.3	
			-2	16,529.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산업4	I	24,773.8	-1	11,550.7	
			-2	13,223.1	
산업5	I	49,832.8	-1	25,039.2	
			-2	24,793.6	
산업6	I	65,603.8	-1	65,603.8	
산업7	I	48,799.6	-1	34,254.2	
			-2	14,545.4	
산업8	I	33,057.8	-1	33,057.8	
산업9	I	33,057.8	-1	33,057.8	
산업10	I	47,720.1	-1	47,720.1	
산업11	I	10,092.5	-1	10,092.5	
산업13	I	14,090.9	-1	14,090.9	
산업14	I	15,504.2	-1	15,504.2	
산업15	I	24,944.9	-1	24,944.9	
산업16	I	40,220.8	-1	40,220.8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산업1	I	31,989.1	-1	31,989.1	· 분할 및 합병 가능
산업2	I	49,234.5	-1	22,838.2	
			-2	10,595.6	
			-3	7,584.1	
			-4	4,138.9	
			-5	4,077.7	
산업3	I	31,713.6	-1	15,184.3	
			-2	16,529.3	
산업4	I	24,773.8	-1	11,550.7	
			-2	13,223.1	
산업5	I	49,832.8	-1	25,039.2	
			-2	24,793.6	
산업6	I	65,603.8	-1	65,603.8	
산업7	I	48,799.6	-1	34,254.2	
			-2	14,545.4	
산업8	I	33,057.8	-1	33,057.8	
산업9	I	33,057.8	-1	33,057.8	
산업10	I	47,720.1	-1	47,720.1	
산업11	I	10,243.1	-1	10,243.1	
산업13	I	14,090.9	-1	14,090.9	
산업14	I	15,504.2	-1	15,504.2	
산업15	I	24,944.9	-1	24,944.9	
산업16	I	40,220.8	-1	40,220.8	

■ 산업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산업11	I	1	◦ 10,092.5㎡ → 10,243.1㎡ 증) 150.6㎡	◦ 산업용지 내(산업11 I)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당초 가감속차로 선형으로 조정하고자 가구 면적 증가

※ 변경부분만 기재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조서상 변경은 없으나, 도시관리계획 도면상 변경은 있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조서상 변경은 없으나, 도시관리계획 도면상 변경은 있음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면 : 실음생략

원주시 공고 제2024-2452호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대로3-10호,중로2-113호,소로2-618호,
완충녹지26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변경5차)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관설동 130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 명칭: 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관설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택수, 이상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01호(여의도동, 하남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있음)

구분	금회시행		비고
	폭원	연장	
대로1-4호	2.4~2.9m	272m	가감속차로
대로3-10호	25m	190m	
중로2-113호	15m	401m	
소로2-618호	8m	5m	
완충녹지26호	589m ²		

※ 설계도면 일부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의 신청기일: 2024. 9. 10.(접수일)

☐ 실시계획(변경5차)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관설동 130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 명칭: 원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관설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택수, 이상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01호(여의도동, 하남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있음)

구분	금회시행		비고
	폭원	연장	
대로1-4호	2.4~2.9m	272m	가감속차로
대로3-10호	25m	190m	
중로2-113호	15m	401m	
소로2-618호	8m	5m	
완충녹지26호	589m ²		

※ 설계도면 일부 변경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2. 9. 5. ~ 2025. 8.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9. 27. ~ 2024. 10. 11.

○ 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대로3-10호,중로2-113호,소로2-618호,완충녹지26호)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1) 대로1-4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97-104	창	53	5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97-5	대	13	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97-7	대	47	4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297-9	대	11	1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97-107	전	22	2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97-94	답	1	1	공유지	원주시	-				
7	원주시 관설동	1297-109	도	93	93	공유지	원주시	-				
8	원주시 관설동	1297-95	구	13	13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9	원주시 관설동	1297-110	구	2	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10	원주시 관설동	1297-112	구	1	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11	원주시 관설동	1297-113	구	1	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12	원주시 관설동	1297-111	대	55	5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3	원주시 관설동	1297-75	답	17	17	국유지	기획 재정부	-				
14	원주시 관설동	1299-6	대	31	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5	원주시 관설동	1299-7	창	75	7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6	원주시 관설동	1299-9	답	121	12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7	원주시 관설동	1299-10	창	13	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8	원주시 관설동	1299-11	창	1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9	원주시 관설동	1329-4	도	1	1	공유지	원주시	-				
20	원주시 관설동	1332-17	도	25	25	공유지	원주시	-				
21	원주시 관설동	1281-4	전	8	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22	원주시 관설동	1301-4	답	18	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 105동 601호 (단구동,단구신성미소지 움아파트)	김경숙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57-2	원주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계				622	622							

2) 대로3-10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1-27	전	105	10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2	원주시 관설동	1283-5	전	31	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안상훈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22, 103동 305호 (단구동,현진에버빌1)	한혜숙	1/2				
3	원주시 관설동	1285-4	전	394	394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10, 205동 504호 (원동,오산역e-편한세상아파트)	이영자	-				
4	원주시 관설동	1286	전	420	2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367-18(관설동)	배양순	-				
5	원주시 관설동	1287-5	전	24	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87-8	전	1,183	1,18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도호길 112	김진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521(관설동)	관부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7	원주시 관설동	1287-9	전	15	1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도호길 112	김진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521(관설동)	관부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8	원주시 관설동	1287-11	전	270	27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로 30, 107동 602호 (개운동, 휴먼시아원주개운1단지아 파트)	이연순	-				
9	원주시 관설동	1288-3	답	639	63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0	원주시 관설동	1288-9	답	129	12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11	원주시 관설동	1300-18	전	903	624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295-268(화산리)	박종용	1/3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안로 211	장익수	1/3				
						경상북도 경주시 능원길 22, 104동 402호(도지동,코아루그랑빌)	장태수	1/3				
12	원주시 관설동	1301-6	답	644	64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13	원주시 관설동	1301-9	답	316	31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 105동 601호 (단구동, 단구신성미소지움아파트)	김경숙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57-2	원주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14	원주시 관설동	산169-14	임	2,429	431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42번길 20, 205동 1102호 (휴천동, 남산현대아파트)	강명구	-				
계				7,502	4,829							

3) 중로2-113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5-3	전	143	143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10, 205동 504호 (원동, 오산역e-편한세상아파트)	이영자	-				
2	원주시 관설동	1287-4	전	445	44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87-7	전	2	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도호길 112	김진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약로 1521(관설동)	관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4	원주시 관설동	1288-2	답	331	3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5	원주시 관설동	1289-1	답	119	11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6	원주시 관설동	1291-3	답	1,283	1,28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7	원주시 관설동	1293	전	137	13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8	원주시 관설동	1294-3	답	361	36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9	원주시 관설동	1295-5	대	14	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10	원주시 관설동	1339	답	563	56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11	원주시 관설동	1339-7	도	89	89	공유지	원주시	-				
12	원주시 관설동	1340	답	441	44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13	원주시 관설동	1340-8	답	195	19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14	원주시 관설동	1341-4	답	238	23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15	원주시 관설동	산169-14	임	2,429	3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42번길 20, 205동 1102호 (휴천동,남산현대아파트)	강명구	-				
16	원주시 관설동	1294-1	임	1,020	1,0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17	원주시 관설동	1294-2	임	1,045	1,04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 공사	-				
18	원주시 관설동	1339-6	답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카이트타워)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19	원주시 관설동	1340-7	답	911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카이트타워)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계				9,770	6,498							

4) 소로2-618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8-5	답	40	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 보증공사	-				
계				40	40							

5) 완충녹지26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공유 지분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88-4	답	237	23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2	원주시 관설동	1288-6	답	14	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3	원주시 관설동	1288-10	답	77	7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				
4	원주시 관설동	1300-22	전	112	11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음지마을길 20-30	엄정태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1494-12	관부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3번길 77-16 (정발산동)	공정남	1/2				
5	원주시 관설동	1301-8	답	5	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586, 102동 802호(채운동, 동해석미모닝파크)	이종민	1/2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8-12, 102동 801호(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이종익	1/2				
6	원주시 관설동	1301-10	답	144	14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 105동 601호 (단구동,단구신성미소지움아파트)	김경숙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57-2	원주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계				589	589							

■ 지장물조서

1) 대로1-4호

순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의종류및내용	
1	관설동 1297-5	화력주	-	1	EA	우산로122	한국전력공사				
2	관설동 1297-14	화력주	-	1	EA	우산로 122	한국전력공사				
3	관설동 1297-14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4	관설동 1297-39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5	관설동 1297-42	가로등	-	1	EA						
6	관설동 1299-1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7	관설동 1299-2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8	관설동 1302-1	가로등	-	1	EA						
9	관설동 1333-1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10	관설동 1333-1	가로등	-	3	EA						
11	관설동 1333-1	화력주	-	2	EA	우산로 122	한국전력공사				

2) 중로2-113호

순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관설동 산169-43	화력주	-	1	EA	우산로 122	한국전력공사				
2	관설동 산169-43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3	관설동 산169-44	통신주	-	1	EA		한국통신				

원주시 공고 제2024-248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2호,소로1-240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단구동 57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원주시 단구동 57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극동에이앤씨원주(주) 대표이사 박상권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50, 제상가2동 제2-102호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결정		금회시행		비고
	폭(m)	연장(m)	폭(m)	연장(m)	
중로2-2호	15~24	1,895	4~5	320	
소로1-240호	11~14	156	5~8	116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4. 9. 11.(접수일)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단구동 57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원주시 단구동 57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극동에이엠씨원주(주) 대표이사 박상권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50, 제상가2동 제2-102호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결정		금회시행		비고
	폭(m)	연장(m)	폭(m)	연장(m)	
중로2-2호	15~24	1,895	4~5	320	
소로1-240호	11~14	156	5~8	11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0.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9. 27. ~ 2024. 10. 11.

○ 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중로2-2호, 소로1-240호)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1) 중로2-2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	단구동	572-1	전	2,808	12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101호 (단구동, 삼우연립)	손호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5-2	대성산업 주식회사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망길 3(단계동)	홍주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103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용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105호 (단구동, 삼우연립)	박용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803호(장안동)	주식회사 코너스톤 커피탈대부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201호 (단구동, 삼우연립)	배옥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89번길 28-1, 나동 202호 (관양동, 영광주택)	이호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203호 (단구동, 삼우연립)	우정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205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란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90-10	대원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101호 (단구동, 삼우연립)	정상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59-6(원동)	신원주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00 두진백로아파트2차 202동 1106호	오연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38, 204동 803호(단구동,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윤영광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765(북동리)	윤창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정태수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201호 (단구동, 삼우연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길 54, 201동 507호(학성동, 삼천리2차아파트)	조영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496, 103동 803호(단구동, 두산아파트)	이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496, 105동 202호(단구동, 두산아파트)	이진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202호 (단구동, 삼우연립)	전은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103호 (단구동, 삼우연립)	한복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205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은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1호 (단구동, 삼우연립)	서영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202호 (단구동, 삼우연립)	방혜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3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점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원주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5호 (단구동, 삼우연립)	이범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630(단구동)	단구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정지길 26-1	윤기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103호 (단구동, 삼우연립)	박성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103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창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3호 (단구동, 삼우연립)	최은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구곡길 57-3(단구동)	김광식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202호 (단구동, 삼우연립)	홍정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385	동원주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 8동 304호(단계동, 단계주공아파트)	서연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205호 (단구동, 삼우연립)	백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878번길 17-1	원옥화				
						원주시 봉산동 900-22	박금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말리길 63-2(개운동)	김문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1(단구동)	윤상모				
2	단구동	575	대	156	3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53(단구동)	고해수				
3	단구동	575-2	도	138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4가길 13(상도동)	김서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간길 53, 2동 901호(단계동, 롯데아파트)	김영현				
4	단구동	575-4	대	166	4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 7, 105동 1301호 (마전동, 영남탑스빌 아파트)	김옥자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 7, 105동 1301호 (마전동, 영남탑스빌 아파트)	송계기				
5	단구동	575-5	대	180	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용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원예농업협	근저당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남원로527번길 23, 211동 303호 (명륜동, 단구아파트)		원주시 무실로 182(단계동) (명륜지점)	동조합		
6	단구동	575-7	도	54	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화로 67, 106동 1906호 (단계동, 봉화산이편한세상)	김창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59-1(단구동)	지예호				
7	단구동	575-9	대	196	5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661, 4동 203호(명륜동, 세경아파트)	정태영				
8	단구동	575-10	대	178	5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61(단구동)	이철이				
9	단구동	575-11	도	4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4가길 13(상도동)	김서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간길 53, 2동 901호(단계동, 롯데아파트)	김영현				
10	단구동	575-14	대	186	6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안길 12-18(강림리)	서수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3(중앙동)	원주 밝음 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1	단구동	576	대	1,034	13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67(단구동)	안옥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538-1(관설동)	유광중				
12	단구동	576-2	대	361	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67(단구동)	안옥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538-1(관설동)	유광중				
13	단구동	576-4	대	322	2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67(단구동)	안옥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538-1(관설동)	유광중				
14	단구동	589-1	대	167	4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69-1(단구동)	노연정				
15	단구동	589-2	도	22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50, 제상가2동 제2-102호(단구동, 단구동한신 더휴단지 내)	극동에이엠 씨원주주식 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37, 102동 1204호 (석전동, 이미지 퍼렌체아파트)	이춘우	근저당권	
16	단구동	589-3	대	159	5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317-4(단구동)	이상옥				
17	단구동	590-11	답	368	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로 116(학성동)	김혜숙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8	단구동	590-13	대	451	7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02, 104동 1202호 (봉산동, 동신아파트)	황노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원주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19	단구동	590-16	대	183	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75 (단구동)	정금화				
20	단구동	1063-3	대	158	12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534번길 50, 비동 708동(단구동, 동보렉스아파트)	박용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무실동 원주시지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21	단구동	1437-28	구	833	18	국유지	농림 수산부				
합 계				8,168	1,159						

2) 소로1-240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	단구동	519-8	도	891	71	공유지	원주시				
2	단구동	520-2	도	10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향길 9 (개운동)	최임경				
3	단구동	520-10	대	135	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미려골길25번길 8(효자동)	오경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243번길 20(단구동)	오기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 190, 1303호(소양로1가, 스마트하우스)	오영환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 비엔나 드라이브 1225 1호	오인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변재길 32, 107동 403호 (행구동, 효성 백년가약아파트)	오인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2, 505동 901호 (주엽동, 강선마을)	오종환				
4	단구동	520-12	대	141	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690, 104동 101호(단구동, 신통일아파트)	윤현주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33 (학성동) (동부지점)	원주축산업협동조 합		근저당권
5	단구동	570-19	대	236	12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735번길 64-1(단구동)	정호진				
6	단구동	571-7	대	128	7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93, 103동 1604호 (현대성우오스타)	남경숙	강원도 원주시 우산초교길 22(우산동)	원주우리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7	단구동	572-1	전	2,808	1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101호 (단구동, 삼우연립)	손호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5-2	대성산업주식회사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망길 3(단계동)	홍주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103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용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105호 (단구동, 삼우연립)	박용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주식회사코너스톤 캐피탈대부		근저당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803호(장안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201호 (단구동, 삼우연립)	배옥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89번길 28-1, 나동 202호 (관양동, 영광주택)	이호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203호 (단구동, 삼우연립)	우정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가동 205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란희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90-10	대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101호 (단구동, 삼우연립)	정상준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59-6(원동)	신원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충청북도 제천시 청진대로 100 두진백로아파트2차 202동 1106호	오연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38, 204동 803호(단구동,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윤영광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765(북동리)	윤창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201호 (단구동, 삼우연립)	정태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길 54, 201동 507호(학성동, 삼천리2차아파트)	조영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496, 103동 803호 (단구동, 두산아파트)	이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496, 105동 202호 (단구동, 두산아파트)	이진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202호 (단구동, 삼우연립)	전은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103호	한복래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단구동, 삼우연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205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은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1호 (단구동, 삼우연립)	서영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202호 (단구동, 삼우연립)	방혜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3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점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원주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5호 (단구동, 삼우연립)	이범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630(단구동)	단구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정지길 26-1	윤기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103호 (단구동, 삼우연립)	박성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103호 (단구동, 삼우연립)	김창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나동 303호 (단구동, 삼우연립)	최은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구곡길 57-3(단구동)	김광식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202호 (단구동, 삼우연립)	홍정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385	동원주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 8동 304호 (단계동, 단계주공아파트)	서연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7, 다동 205호 (단구동, 삼우연립)	백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878번길 17-1	원옥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박금옥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봉산동 900-2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말리길 63-2(개운동)	김문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241(단구동)	윤상모				
8	단구동	1064-12	대	198	1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243번길 4(단구동)	이은자				
9	단구동	1064-13	대	180	1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243번길 2(단구동)	장정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243번길 2(단구동)	장현석				
10	단구동	1065-8	대	169	11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93, 103동 1604호 (현대성우오스타)	남경숙	강원도 원주시 우산초교길 44(우산동)	원주우리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1	단구동	1066-8	도	56	4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602번길 12-7(개운동)	김영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243번길 18-4(단구동)	김영만				
12	단구동	1066-12	대	283	9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27, 207동 503호 (단구동, 개운2차 한신희플러스아파트)	정병일				
합 계				5,235	1,005						

강릉시 공고 제2024-1651호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소방심신수련원)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시송달 공고

강릉시 고시 제2023-289호(2023.8.9.)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번지 일원의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소방심신수련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강릉시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소방심신수련원)사업
- 2) 명 칭: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소방심신수련원)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 정 일	비고
연구시설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번지 일원	107,405	강릉시고시 제2023-289호 (2023.08.0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사업시행자(대표)	주 소
소방청(허석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8년 6월 30일

바. 자금조달계획

- 1) 총사업비: 52,000백만원
-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07,411	107,405	-					
1	주문진읍 향호리	3	도	90,673	90,667	국	건설부				
2		3-8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3		3-9	철	123	123	국	국토교통부				
4		3-11	도	3,079	3,079	국	건설부				
5		3-12	도	469	469	국	건설부				
6		3-13	도	1,964	1,964	국	건설부				
7		4-1	도	486	486	김○근	주문진읍 주문리				
8		5-8	도	565	565	국	기획재정부				
9		22-9	도	662	662	국	기획재정부				
10		22-14	도	331	331	국	기획재정부				
11		28-1	도	179	179	국	건설교통부				
12		28-5	도	54	54	국	건설교통부				
13		산20-1	도	1,587	1,587	국	기획재정부				
14		산21-1	도	6,049	6,049	국	기획재정부				
15		산45	도	70	70	국	건설부				
16		산45-2	도	482	482	국	건설부				
17	산46	도	496	496	방○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4. 9. 20. ~ 10. 7.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강릉시청 도시과(6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①건명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소방심신수련원)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열람·공고		
②열람의견관련토지	토 지 소 재 지		지적지목
③의견제출인	성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④의견			

강릉시 공고 제2024-165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릉시청)사업 공사완료 공고

강릉시 고시 제2023-333호(2023.9.6.)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건설기계 차고지 증축공사 목적의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릉시청)”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강릉시장

- 1. 사업시행지 위치: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릉시청)사업
 - 2) 명 칭: 건설기계 차고지 증축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강릉대로33)
 - 2) 성 명: 강릉시장(도로과장)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소 계	공사완료	기인가분	금회분		
강릉시청	공공청사	141,784	141,784	138,427	2,755	602	강원도고시 제1997-34호 (1997. 4. 10.)	

구 분		편 입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41,784	100.00	
건축시설 부지	소 계	24,715	17.30	
	시청사	12,078	8.50	완료
	시의회	3,255	2.30	완료
	어린이집	1,755	1.20	완료
	식당동	1,500	1.10	완료
	산불대응센터	1,120	0.80	완료
	수소충전소	1,650	1.10	완료
	미래교통복합센터	2,755	1.90	기인가분
	건설기계 차고지	602	0.40	금회분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편 입 면 적(m²)	구 성 비(%)	비 고
기반시설 부지	소 계	40,776	28.80	
	도로	25,384	17.90	완료
	주차장	15,392	10.90	완료
기타시설 부지	소 계	28,230	20.00	
	휴게공원	3,734	2.70	변경
	시민광장	3,854	2.70	완료
	열린광장	6,467	4.60	완료
	공원	12,672	8.90	완료
	소공원	1,503	1.10	완료
녹지시설부지	녹지	48,063	33.90	완료

3) 건축 규모(금회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건축면적(m²)	연면적(m²)	비고
강릉시청	건설기계 차고지	홍제동 1001번지 일원	511.25	490.80	금회분

5. 공사완료일: 2024. 8.

동해시 고시 제2024-165호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북평산단제2근린공원2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동해시고시 제98호(2020.06.26.)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된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북평산단제2근린공원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제2항 및 제3항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동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동해시 구미동 산 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북평산단제2근린공원2호)사업
나. 명 칭 : 북평산단제2근린공원2호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동해시장(녹지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공원조성(1개소) : A = 43,945㎡

구 분	시 설 구 분				기시행 (m)	금회시행 (m)	시행면적 (㎡)	비고
	명칭	종류	위치	결정면적(㎡)				
공원	북평산단제2근 린공원2호	근린공원	구미동 산25번지 일원	43,945	-	43,945	43,945	-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변경)
가. 기 정 : 2020. 6. 26. ~ 2024. 12. 31.
나. 변 경 : 2020. 6. 26. ~ 2027. 06. 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구미동	9	전	364	364	동해시				
2	구미동	11-3	임	57	57	동해시				
3	구미동	11-4	임	63	63	동해시				
4	구미동	16-1	임	718	718	동해시				
5	구미동	16-4	임	392	35	동해시				
6	구미동	16-5	도	137	137	동해시				
7	구미동	17-1	전	574	420	동해시				
8	구미동	17-2	전	1,914	432	동해시				
9	구미동	17-4	도	541	14	동해시				
10	구미동	17-5	도	521	210	동해시				
11	구미동	산 25	임	4,234	4,234	동해시				
12	구미동	산 25-1	임	16	16	동해시				
13	구미동	산 25-2	임	112	112	박*재	동해시 구미동 328	주식회사대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석운동)	지상권
14	구미동	산 25-3	임	200	200	박*재	동해시 구미동 328			
15	구미동	산 26	임	4,010	4,010	동해시				
16	구미동	산 31	임	3,455	3,455	동해시				
17	구미동	산 32	임	5,253	5,253	동해시				
18	구미동	산 32-1	임	74	4	동해시				
19	구미동	산 32-2	도	620	446	동해시				
20	구미동	산 33	임	1,356	1,356	동해시				
21	구미동	산 36	임	5,930	5,930	동해시				
22	구미동	산 37	임	538	538	동해시				
23	구미동	산 38	임	1,785	1,785	동해시				
24	구미동	산 39	임	298	298	김*호	동해시 구미동 295			
25	구미동	산 40	임	1,587	1,587	동해시				
26	구미동	산 41	임	1,352	1,352	동해시				
27	구미동	산 36-1	임	1,091	98	윤*근	삼척시 북평읍 구미리 343			
28	구미동	산 36-3	임	33	33	홍*만	동해시 동해역길 17-5			
29	구미동	산 36-4	임	22	22	동해시				
30	구미동	산 36-5	임	19	19	홍*만	동해시 동해역길 17-5	주식회사대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석운동)	지상권
31	구미동	산 36-6	임	46	46	동해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32	구미동	산 33-1	임	238	238	조*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 106동 602호	주식회사대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석운동)	지상권
						김*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2길 26-5			
						전*준				
33	구미동	산 33-2	임	260	260	동해시				
34	구미동	산 33-3	임	240	240	조*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 106동 602호	주식회사지 *****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상권
						김*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2길 26-5			
						전*준				
35	구미동	산 33-4	임	6,336	6,336	동해시				
36	구미동	산 37-1	임	188	188	정*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33 청솔마을 903동 905호	주식회사지 *****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상권
						정*수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 108동 603호	주식회사대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석운동)	지상권
37	구미동	산 37-2	임	3,439	3,439	동해시				
합 계				48,013	43,945			총 37필지		

■ 물건조서 : 편입 토지 내 모든 건물 및 지장물 일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문의처 :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 녹지과(☎033-530-2264) 】

동해시 고시 제2024-166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27일

동 해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취지

- 이도동 식자재마트 진입도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땀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시계획시설

가) 도로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54	15.5	국지 도로	147	중로1-15 이도동 364-6	이도동 333-1	일반 도로	-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	중로 2-54	- 노선신설 - 폭원(B) = 15.5m - 연장(L) = 147m	무상귀속된 이도동 식자재마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등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동해시 고시 제2024-167호

동해 도시관리계획(효가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 된 동해 도시관리계획(효가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27일

동 해 시 장

가. 변경취지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나. 도시관리계획(효가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9	효가2지구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해시 효가동 492번지 일원 (기정:317-4번지)	41,391	증) 68.3	41,459.3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9	동해시 효가동 492번지 일원 (기정:317-4번지)	41,391	증) 68.3	41,459.3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1,459.3	-	41,459.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657.9	-	36,657.9	88.4
자연녹지지역	4,801.4	-	4,801.4	11.6

※ 구역내 용도지역 면적 기준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	35 ~38	주간선	11,114 (121)	대로2-3 부곡동 166도	대구동 구역계 추암동 산29-1도	일반 도로	건고 제84호 (1981.3.16)	-
기정	대로	2	7	30 ~33	주간선	1,080 (153)	대로1-3 효가동 352-1전	대로3-20 송정동 1464-16절	일반 도로	강고 제217호 (1996.12.17)	-
기정	소로	3	239	2	특수 도로	86	대로1-3 효가동 산12-3도	효가동 소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동해고제79호 (2017.7.7.)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효가 소공원	소공원	효가동 493번지 일원 (기정:317-10번지)	4,801	증)0.4	4,801.4	강고 제217호 (1996.12.1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5	효가 소공원	• 면적변경 A = 4,801㎡ → 4801.4 증)0.4㎡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공원 세부조성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계	4,801	4,801.4	80	72	-
도로시설	17	9	17	9	• 계단
휴양 및 운동시설	63	63	63	63	• 등 의자 3기, 체육시설 2기, 표지판 2기, 공원등 3기, CCTV 1기
녹 지	4,721	4,729.4	-	-	• 공원등 1기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가) 총괄표

구 분	도면 표시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총 계		41,391	증)68.3	41,459.3	100.0	100.0	-
공동주택용지	A	35,239	증)62.2	35,301.2	85.1	85.1	-
도로용지	B	1,351	증)5.7	1,356.7	3.3	3.3	-
공원용지	C	4,801	증)0.4	4,801.4	11.6	11.6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1,391	증)68.3	41,459.3	
A	1	동해시 효가동 492번지 일원(기정:317-4)	35,239	증)62.2	35,301.2	• 공동주택용지(1가구 1획지) • 필지 합병후 공동주택 건립
B	1	동해시 효가동 495번지일원(기정:352-2)	685	증)3.6	688.6	• 대로1-3호선(기부채납)
	2	동해시 효가동 496번지 일원(기정:317)	431	증)2.9	433.9	• 대로2-7호선(기부채납)
	3	동해시 효가동 494번지 일원(기정:352-25)	235	감)0.8	234.2	• 보행자전용도로(기부채납)
C	1	동해시 효가동 493번지 일원(기정:317-10)	4,801	증)0.4	4,801.4	• 소공원(기부채납)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용 도	권장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륜		250%이하	-
		층 수	최고층수	20층	평균 18층
			최저층수	1층	부대시설 1층
		배 치		탐상형	배치계획도 참고
		형태 및 색채		-	-
		건 축 선		-	-

다. 동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승인도 : 실음생략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도시과(☎ 033-530-2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동해시 공고 제2024-1107호

동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강원도고시 제127호(2002.5.23.)로 최초 시설 결정되고 동해시고시 제2호(2015.1.1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동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해시 지흥동 533번지(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 : 위치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나. 명 칭 :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변경사업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당초) 주식회사 상보산업 대표 임 현 진

(변경) 주식회사 상보산업 대표 임 기택

나. 주 소 : 동해시 동해대로 5219(지흥동)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사업면적 : (당초) $A = 10,689\text{m}^2 \rightarrow$ (변경) $A = 10,576.1\text{m}^2$

※ 등록전환측량에 따른 측량오차 반영

나. 규 모

1) 시설개요(변경)

명 칭	면 적(m^2)		비 고
	기 정	변 경	
근 생 시 설	1,500	1,300	건축축소 및 말소
파 쇄 시 설	2,500	1,980	-
폐기물 야적장	2,910	3,570	-
재활용 야적장	730	1,050	-
기 타 부 지	1,823	1,450.1	-
단지내 도로	1,226	1,226	폭원 = 6.0m
합 계	10,689	10,576.1	감) 112.9

2) 건축개요(변경)

연 번	시 설 명	건 축 면 적(㎡)		비고
	구분	기 정	변 경	
1-1	사무소	115.20	115.20	-
1-2	사무소-창고	42.0	42.0	위치이동
1-3	폐목처리동	300.0	297.9	건축축소
1-4	사무실	18.0	18.0	위치이동
1-5	실험실	18.0	18.0	위치이동
1-6	실험실	18.0	-	건축말소
합 계		511.2	491.1	감) 20.1

5. 사업의 착수·준공 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2024. 10.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2025. 06. 30.

6.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9.27. ~ 2024.10.11.

나.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

다. 의견서 서식 : 동해시청 홈페이지(<http://dh.go.kr>) 고시·공고란 게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등록전환측량 및 토지이동(합병)에 따른 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1	지흥동	533	잡	9,534.2	9,534.2	(주)상보산업	동해시 동해대로 5219(지흥동)		
2	지흥동	494-8	천	1,041.9	1,041.9	국(국토교통부)			
합 계				10,576.1	10,576.1			총 2필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동해시 공고 제2024-1110호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동해시고시 제90호(2020.06.19.)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해시고시 제133호(2024.07.26.)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동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동해시 구미동 44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2-3호선)사업

나. 명 칭 : 북평동 갯목입구~산업단지배후도로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동해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분할측량에 따른 미편입지 제외

• 당초 : L= 610m, B= 30m, A= 18,080㎡

• 변경 : L= 610m, B= 30m, A= 15,948㎡(감 2,132㎡)

구 분	시 설 구 분				총연장 (m)	기시행 (m)	금회시행 (㎡)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대로	2	3	30	3,680	3,070	610	-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2020. 06. 19.(실시계획 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당초)2024. 12. 31. → (변경)2025. 12. 31.

6. 열람 기간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가. 기 간 : 2024. 9. 27. ~ 2024. 10. 11. (14일간)

나.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1	구미동	442-1	도	647	134	동해시				
2	구미동	443-3	도	541	541	동해시				
3	구미동	394-1	도	1,845	1,845	동해시				
4	구미동	390-5	도	502	502	국(국토교통부)				
5	구미동	386-5	도	76	76	동해시				
6	구미동	386-4	도	558	558	동해시				
7	구미동	390-9	잡	8	8	국(기획재정부)				
8	구미동	390-10	잡	27	27	국(기획재정부)				
9	구미동	386-3	도	1,061	1,061	국(국토교통부)				
10	구미동	387-4	도	160	160	동해시				
11	구미동	388-3	도	921	921	동해시				
12	구미동	566-3	도	342	342	강원도				
13	구미동	641	도	603	603	국(건설교통부)				
14	구미동	649	잡	224	224	동해시				
15	구미동	637	도	461	461	동해시				
16	구미동	628	천	28	28	국(건설교통부)				
17	구미동	633	도	72	72	국(건설부)				
18	구미동	635	천	509	92	국(건설부)				
19	구미동	655	잡	205	120	강원도				
20	구미동	652	전	135	135	동해시				
21	구미동	647	도	1,327	1,172	국(건설교통부)				
22	구미동	566-9	구	1,676	356	국(건설부)				
23	구미동	438-3	도	1,218	27	동해시				
24	구미동	578-2	도	89	89	국(건설부)				
25	구미동	408-8	전	626	626	김*황				
26	구미동	407-4	전	212	212	김*황				
27	구미동	406-10	전	208	208	동해시				
28	구미동	398-5	답	99	99	동해시				
29	구미동	398-4	제	236	236	동해시				
30	구미동	399-4	제	8	8	국(국토교통부)				
31	구미동	397-1	답	21	21	구미리제2 **계				
32	구미동	396-2	도	167	167	동해시				
33	구미동	386-6	전	422	422	동해시				
34	구미동	386-7	전	162	162	동해시				
35	구미동	390-8	제	147	147	국(국토교통부)				
36	구미동	385-4	전	60	60	강원도				
37	구미동	386-1	제	381	381	국(국토교통부)				
38	구미동	387-1	제	314	54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39	구미동	385-5	전	1	1	김*애				
						김*희				
40	구미동	387	채	322	256	국(국토교통부)				
41	구미동	388	잡	556	556	동해시				
42	구미동	566-23	전	9	9	동해시				
43	구미동	388-6	전	99	99	동해시				
44	구미동	388-9	전	171	171	동해시				
45	구미동	388-4	도	7	7	국(국토교통부)				
46	구미동	566-20	전	228	228	동해시				
47	구미동	642	전	153	153	동해시				
48	구미동	650	답	130	130	동해시				
49	구미동	651	답	240	240	동해시				
50	구미동	645	전	264	264	동해시				
51	구미동	656	전	83	83	동해시				
52	구미동	657	답	50	50	동해시				
53	구미동	658	답	10	10	국(건설교통부)				
54	구미동	566-7	전	29	2	국(건설교통부)				
55	구미동	566-21	전	52	52	강원도				
56	구미동	566-37	답	108	27	국(기획재정부)				
57	구미동	566-22	답	47	47	강원도				
58	구미동	566-28	구	14,706	664	동해시				
59	구미동	444-3	전	382	382	동해시				
60	구미동	405-1	전	159	159	동해시				
61	구미동	566-17	잡	295	1	동해시				
합 계				34,399	15,948			총 62필지		

■ 물건조서 : 편입 토지 내 모든 건물 및 지장물 일체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구미동	408-8	관정	농업용 전기포함	1	식	김*황	동해시 북평동 구미택지6길 4-1호 1층			
			비닐하우스	6.0*3.0	18.0	m²					
			컨테이너	4.0*7.0	1	ea					
			관정호수		1	식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문의처 :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 건설과(☎033-530-2202) 】

동해시 공고 제2024-1111호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동해시고시 제98호(2020.06.26.)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해시고시 제195호(2021.12.29.)로 변경 인가된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동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가. 동해시 천곡동 산1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가. 동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정근린공원)사업

3.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가. 면적 : (당초) $A = 832,640\text{m}^2 \Rightarrow$ (변경) $A = 830,321\text{m}^2$ (감 2,319 m^2)

☞ 동해시고시 제14호(24.1.26.)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변동사항 반영

구분	시설구분	시설결정	기시공(㎡)	금회집행(㎡)	향후집행(㎡)	비 고
공원	근린공원-5	$A=832,640\text{m}^2$	-	830,321	-	당 초
		$A=830,321\text{m}^2$				변 경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동해시장(녹지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6. 사업의 착수·준공 예정일 (변경)

가. (당초) 2020. 06. 26. ~ 2024. 12. 31.

나. (변경) 2020. 06. 26. ~ 2025. 06. 2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분할·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구역 내 토지이동 증감 반영(사업구역 변경 없음)

가.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용정동	277-25	임	2,051	2,051	영*****중중회	동해시 채운동 441			
2	용정동	301-1	구거	2,165	63	국(국토해양부)				
3	용정동	324-1	천	622	63	국(기획재정부)				
4	용정동	325-1	전	92	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용정동	326	전	1,402	1,402	동해시				
6	용정동	327	전	2,384	2,3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7	용정동	499	하천	1,061	1,061	국(기획재정부)				
8	지흥동	4	임	1,236	1,236	정*진	동해시 부곡동 85-6			
9	지흥동	5	전	912	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	천곡동	101-1	전	1,395	1,395	박*순	강원도 동해시 천곡1길 58, 102동 104호(천곡동, 한움빌리지)			
11	천곡동	107-1	전	817	817	동해시				
12	천곡동	107-2	잡	2,574	2,574	동해시				
13	천곡동	107-3	잡	1,269	1,269	동해시				
14	천곡동	125-1	전	264	264	동해시				
15	천곡동	126	전	1,438	1,438	동해시				
16	천곡동	126-1	대	200	200	동해시				
17	천곡동	126-2	임	2,137	2,137	동해시				
18	천곡동	336-1	전	50	50	동해시				
19	천곡동	341-1	전	156	156	동해시				
20	천곡동	342-1	전	823	823	동해시				
21	천곡동	343-1	전	1,947	1,947	동해시				
22	천곡동	343-2	전	1,574	1,574	동해시				
23	천곡동	344	전	1,660	1,6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4	천곡동	345	임	1,630	1,6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5	천곡동	346	임	618	618	동해시				
26	천곡동	347	임	152	152	국(재정경제원)				
27	천곡동	348	전	635	635	최*식	동해시 천곡동 409			
						최*철	동해시 천곡동 409			
						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206동 107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8	천곡동	349	전	3,201	3,2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9	천곡동	349-1	전	1,192	1,1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0	천곡동	350	임	1,329	1,3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1	천곡동	351	임	572	5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2	천곡동	352	임	1,299	1,299	김*화	동해시 갯목길 14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33	천곡동	353	임	519	5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4	천곡동	354	전	136	1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5	천곡동	356-1	전	36	36	동해시				
36	천곡동	357-1	전	3	3	동해시				
37	천곡동	1003	대	41,191	30,625	동해시				
38	천곡동	1090-33	도	6,930.9	3,844	동해시				
39	용정동	산26	임	2,637	2,637	남*****과중중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40	용정동	산26-2	임	146	146	동해시				
41	용정동	산26-3	임	39	21	동해시				
42	용정동	산27-1	임	10,294	10,2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3	용정동	산27-2	임	8,446	8,446	정*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7, 102동 1803호			
44	용정동	산27-13	임	2,587	2,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5	용정동	산27-7	도로	1,875	685	동해시				
46	용정동	산28	임	2,254	2,2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7	용정동	산28-1	임	27	27	동해시				
48	용정동	산29	임	553	553	동해시				
49	용정동	산29-2	도로	1,082	395	동해시				
50	용정동	산71-3	임	590	22	동해시				
51	용정동	산75	임	397	334	동해시				
52	용정동	산76	임	397	18	동해시				
53	용정동	산77-2	도로	3,174	689	국(건설부)				
54	용정동	산80-6	임	23,874	23,8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5	용정동	산80-1	임	9918	99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6	용정동	산80-7	임	965	9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7	용정동	산81-1	임	1,489	1,4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8	용정동	산82-1	임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9	용정동	산88-1	임	13,845	13,845	남*****과중중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60	용정동	산89	임	18,248	18,2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	용정동	산90-1	임	13,163	13,1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2	용정동	산91	임	42,546	42,546	강원도교육감	춘천시 옥천동 24			
63	용정동	산92	임	15,868	15,868	삼*****파****중중	동해시 송정동 719			
64	용정동	산93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5	용정동	산94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6	용정동	산95-1	임	2,975	2,975	동해시				
67	용정동	산95-3	임	17,619	17,6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8	용정동	산96-1	임	13,828	13,828	김*기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84-1(발한동)			
69	용정동	산97-3	임	2,834	2,8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70	용정동	산97-4	임	4,338	4,338	이*운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54, 504동 202호(양산신도시엘에이치아파 트5단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71	용정동	산98-1	임	1,349	1,3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72	지흥동	산3-1	임	163	163	삼****과장*중증	동해시 송정동 801			
73	지흥동	산4-1	임	264	264	삼****과장*중증	동해시 송정동 801			
74	지흥동	산5	임	23,405	23,405	동해시				
75	지흥동	산6-2	임	6,988	6,988	삼**씨감*공과	동해시 천곡동 373-3			
76	지흥동	산19-5	임	46,566	46,566	삼**씨감*공과	동해시 천곡동 373-3			
77	천곡동	산12-2	임	5,982	5,982	남**씨침**파중증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78	천곡동	산12-5	임	829	829	남**씨침**파중증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61			
79	천곡동	산12-7	임	212	212	동해시				
80	천곡동	산13-1	임	12,137	12,137	(재)송****단	동해시 송정동 1058			
81	천곡동	산13-2	임	348	348	(재)송****단	동해시 송정동 1058			
82	천곡동	산14	임	2,975	2,9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83	천곡동	산15-1	임	50,083	50,083	홍*표	동해시 천곡동 962-26			
						홍*영	강원도 강릉시 원대로20번길 10-1 (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84	천곡동	산15-2	임	2,579	2,579	동해시				
85	천곡동	산16-1	임	83,604	83,604	김*백	동해시 용정동 213			
						동해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86	천곡동	산16-2	임	2,975	2,975	동해시				
87	천곡동	산16-3	임	1,884	1,884	국(재정경제원)				
88	천곡동	산16-4	임	2,777	2,777	이*매	동해시 용정동 354			
89	천곡동	산17	임	3,967	3,9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90	천곡동	산18	임	2,380	2,380	동해시				
91	천곡동	산19-1	임	3,967	3,967	동해시				
92	천곡동	산19-2	임	3,074	3,0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93	천곡동	산20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94	천곡동	산21	임	3,967	3,967	박*분	동해시 동굴로 15,502동 201호			
						김*수	경상북도 경주시 서약5길 20			
						동해시				
95	천곡동	산22	임	1,190	1,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서약5길 20			
96	천곡동	산23-1	임	35,940	31,682	동해시				
97	천곡동	산23-2	임	893	893	동해시				
98	천곡동	산24-1	임	4,086	4,0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문*옥	강원도 동해시 망상2길 40-1(망상동)			
						이*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47-1			
						이*섭	강원도 동해시 망상2길 40-1(망상동)			
99	천곡동	산25	임	14,959	11,802	동해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00	천곡동	산26-3	임	4,846	4,8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1	천곡동	산26-7	임	36,998	36,998	동해시				
102	천곡동	산26-10	임	377	377	동해시				
103	천곡동	산26-12	임	18,753	18,7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4	천곡동	산26-13	임	4,088	4,088	동해시				
105	천곡동	산42-6	임	8,766	5,617	동해시				
106	천곡동	산44-1	임	1,253	1,253	동해시				
107	천곡동	산45-1	임	22,728	22,7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동해시				
108	천곡동	산60-2	임	5,851	5,8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동해시				
109	천곡동	산60-3	임	4,055	4,055	동해시				
110	천곡동	산60-5	임	1,057	1,057	동해시				
111	천곡동	산60-7	임	317	317	동해시				
112	천곡동	산61-5	임	85	85	동해시				
113	천곡동	산61-6	임	267	267	동해시				
114	천곡동	산61-7	임	62	62	동해시				
115	천곡동	산61-8	임	552	552	동해시				
116	천곡동	산61-9	임	1,332	1,332	동해시				
117	천곡동	산62	임	10,413	10,413	정*화	동해시 용정동 14			
						정*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8,지층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8	천곡동	산63-1	임	38	38	동해시				
119	천곡동	산64-1	임	168	168	동해시				
120	천곡동	산66-2	임	8,665	8,665	동해시				
121	천곡동	산66-3	임	34	34	동해시				
122	천곡동	산66-4	임	12	12	동해시				
123	천곡동	산68-2	임	23,597	23,597	동해시				
124	천곡동	산69-1	임	730	730	동해시				
125	천곡동	산70-2	임	3,901	3,901	동해시				
126	천곡동	산71	임	298	298	박*란	삼척군 미로면 상거노리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7	천곡동	산72-1	임	10,211	10,211	동해시				
128	천곡동	산73-1	임	1,672	1,672	동해시				
129	천곡동	산74-1	임	27,074	27,074	박*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9			
						박*화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498-6			
						박*우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76 효성빌라 3동 202호			
						문*준	강원도 동해시 샘실3길 89, 401호(천곡동, 대주연립)			
130	천곡동	산74-2	임	2,876	2,876	동해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유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31	천곡동	산74-3	임	793	7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2	천곡동	산75-2	임	15,944	15,944	변*권	서울 성동구 신당동 25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3	천곡동	산76-7	임	15,493	15,4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4	천곡동	산76-4	도로	214	70	국(국토교통부)				
합 계		총 134필지		862,732.9	830,321					

나. 물건조서 : 편입 토지상에 해당하는 모든 건물 및 지장물 일체

8. 열람 기간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가. 기 간 : 2024. 9. 27. ~ 2024. 10. 11. (14일간)

나.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

다. 의견서 서식 : 동해시청 홈페이지(<http://dh.go.kr>) 고시·공고란 게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33-530-2212), 녹지과 공원팀(☎033-530-2264)]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고시 제2024-103호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5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8일

태 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계획적·체계적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를 통한 안정적 사업실현
- 신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기업유치로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현황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태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사업화 방안을 검토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55-1번지 일원
- 면 적 : 199,736.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 치 업 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24	1차 금속 제조업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나. 입주제한물질(변경없음)

대기환경 분야 입주제한 물질					
1	포름알데히드	7	황화수소	13	1,3-부타디엔
2	니켈 및 그 화합물(니켈)	8	불소화물	14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3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	9	다이옥신	15	디클로로메탄
4	카드뮴 및 그 화합물(카드뮴)	10	페놀 및 그 화합물	1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	비소 및 그 화합물(비소)	11	클로로포름	17	에틸벤젠
6	벤젠	12	아세트알데히드	18	트리클로로에틸렌
수환경 분야 입주제한 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12	폴리클로리네이트디바이페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	납과 그 화합물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24	브로모포름
3	비소와 그 화합물	14	벤젠	25	아크릴아미드
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사염화탄소	26	나프탈렌
5	시아나화합물	16	디클로로메탄	27	폼알데히드
6	유기인 화합물	17	1,1-디클로로에틸렌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7	6가크롬 화합물	18	1,2-디클로로에탄	29	펜타클로로페놀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19	클로로포름	30	스티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0	1,4-다이옥산	31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32	안티몬
11	페놀	22	염화비닐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산업표준 분류	업 종 명	면 적(m ²)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27,462.3	-	127,462.3	100.0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27,761.9	-	27,761.9	21.8
C24	1차 금속 제조업	58,392.9	증) 27,787.5	86,180.4	67.6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1,307.5	감) 27,787.5	13,520.0	10.6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황지동)
(위탁 시행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 사업시행자의 성명 : 태백시(위탁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변경없음)

구 분		계	전	임	대	도	철	기타
면적	m ²	199,736.9	93,285.5	70,245.9	3,016.0	15,194.6	3,554.1	14,440.8
	%	100.0	46.7	35.2	1.5	7.6	1.8	7.2
필지수	필지	135	42	18	7	40	17	11
	%	100.0	31.1	13.3	5.2	29.6	12.6	8.2

주) 기타 : 잡종지, 묘지, 하천

나. 소유자별 현황(변경)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면적	㎡	기정	199,736.9	9,202.9	20,886.5	169,647.5	
		증감	-	감) 1,791.4	증) 171,438.9	감) 169,647.5	
		변경	199,736.9	7,411.5	192,325.4	-	
	%	기정	100.0	4.6	10.5	84.9	
		증감	-	감) 0.9	증) 85.8	감) 84.9	
		변경	100.0	3.7	96.3	-	
필지수	필지	기정	135	40	27	68	
		증감	-	감) 14	증) 82	감) 68	
		변경	135	26	109	-	
	%	기정	100.0	29.6	20.0	50.4	
		증감	-	감) 10.3	증) 60.7	감) 50.4	
		변경	100.0	19.3	80.7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99,736.9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27,462.3	63.8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산업용지 확보
지 원 시 설 용 지		2,258.5	1.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0,016.1	35.1	
	도로	34,244.4	17.2	•계획기준: 8% 이상
	주차장	1,499.4	0.8	•계획기준: 0.6% 이상
	공원	654.9	0.3	•1개소
	녹지	17,787.1	8.9	•계획기준: 9.5% 미만
	가압펌프장	-	-	•112.3㎡, 녹지 내 중복 결정으로 면적에서 제외
	배수지	11,637.1	5.8	•1개소
저류지		4,193.2	2.1	•1개소

주) 토지이용계획표상 도로 면적은 구역 내 북측 도로부지를 포함한 면적임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1,856	34,244.4	1	578	12,233.5	4	422	4,913.5	3	856	17,097.4
중로	5	1,192	21,715.0	1	578	12,233.5	3	261	4,459.6	1	353	5,021.9
소로	3	664	12,529.4	-	-	-	1	161	453.9	2	503	12,075.5

주) 도로의 노선수, 연장, 면적은 구역내 합계임

나)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8개 노선					12,750 (1,856)	-	-				
중 로	5개 노선					12,086 (1,192)	-	-				
기정	중로	1	8	8~21 (21)	보조 간선도로	11,459 (578)	5호광장 통동344-3도	대로3-3 동점동139-7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강고85-111호 (1985.11.04.)	
기정	중로	2	1	17	집산도로	104 (91)	중로1-8 철암동299-4전	중로3-1 철암동254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중로	2	2	17	집산도로	24	중로1-8 철암동235-4전	철암동303-7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46	철암동254전	소로1-1 철암동257-2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중로	3	1	14	집산도로	353	소로3-142 철암동274-14	철암동254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소 로	3개 노선					664	-	-				
기정	소로	3	1	11	국지도로	495	철암동 290-1전	철암동251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	철암동257전	철암동258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소로	2	1	9~12 (4~6)	국지도로	161	철암동278-10도	소로3-142 철암동290-2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강고85-111호 (1985.11.04.)	
기정	소로	3	142	6	국지도로	279	소로2-1 철암동290-2전	철암동268-10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강고85-111호 (1985.11.04.)	단지 외

주) ()연장은 단지내 도로연장임

다)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1,499.4	-	1,499.4	-	
기정	1	노외주차장1	철암동 255-1 일원	1,499.4	-	1,499.4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공원·녹지 총괄

구분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7	7	18,442.0	-	18,442.0	
공원	-	1	1	654.9	-	654.9	
녹지	-	6	6	17,787.1	-	17,787.1	가압펌프장 중복결정 (112.3㎡)

나) 공원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개소	-	654.9	-	654.9		
기정	1	소공원	철암동 255-1 일원	654.9	-	654.9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다) 녹지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개소	-	-	17,787.1	-	17,787.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56 일원	1,462.8	-	1,462.8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62 일원	2,558.3	-	2,558.3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산3-3 일원	4,744.0	-	4,744.0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55-3 일원	3,539.6	-	3,539.6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303-4 일원	3,197.5	-	3,197.5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가압장 중복결정 (112.3㎡)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98-10 일원	2,284.9	-	2,284.9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3)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32	증) 84	416	
공업용수	269	증) 86	355	
생활용수	63	감) 2	61	

4) 하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일 최대 오 · 폐수량(m³/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6.0	증) 53.5	249.5	
공업용수	147.0	증) 55.0	202.0	
생활용수	49.0	감) 1.5	47.5	

5)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가) 배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1,637.1	－	11,637.1	－	
기정	1	배수지	철암동 250 일원	11,637.1	－	11,637.1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나) 가압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112.3	－	112.3	－	
기정	1	가압장	철암동 237-2 일원	112.3	－	112.3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완충녹지 중복결정 (112.3㎡)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4,193.2	—	4,193.2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철암동 288-1 일원	4,193.2	—	4,193.2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7) 전력공급계획(변경)

구 분	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3,792	증) 3,226	17,018	10,386	증) 2,420	12,806	
산업시설용지	13,511	증) 3,226	16,737	10,133	증) 2,420	12,553	
지원시설용지	281	—	281	253	—	253	

8)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열수요(Gcal/년)				
	공정열		난방/급탕	취사용	합계
	직접열	간접열			
합 계	149,631		294	13	149,938
	81,585	68,046			
산업시설용지	81,585	68,046			149,631
지원시설용지			294	13	307

- 변 경

구 분	열수요(Gcal/년)				
	공정열		난방/급탕	취사용	합계
	직접열	간접열			
합 계	128,643		294	13	128,950
	82,522	46,121			
산업시설용지	82,522	46,121	-	-	128,643
지원시설용지	-	-	294	13	307

9) 통신시설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규 모	회선기준	수요량 (회선)	비 고
합 계	-	-	146	여유율 20%(회선) 적용
여유율 적용	-	-	25	
수요량	-	-	121	
산업시설	505인	1회선/10인	51	단지 내 산업시설 종사자수
지원시설	2,258.5㎡	0.3회선/10㎡	68	지원시설용지 면적
공중전화	526인	1회선/500인	2	단지 내 총 종사자수

- 변 경

구 분	규 모	회선기준	수요량 (회선)	비 고
합 계	-	-	145	여유율 20%(회선) 적용
여유율 적용	-	-	26	
수요량	-	-	119	
산업시설	483인	1회선/10인	49	단지 내 산업시설 종사자수
지원시설	2,258.5㎡	0.3회선/10㎡	68	지원시설용지 면적
공중전화	504인	1회선/500인	2	단지 내 총 종사자수

10)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운영시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31,568.56ton/년, 지정폐기물은 1,377.61ton/년으로 산정되었음

-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중 재활용을 제외한 처리대상 폐기물량은 약 27,342.44톤/년으로 예측되어 법적기준(2만톤/년 이상)에 해당하지만, 사업지구 조성면적이 199,736.9㎡로 법적기준(50만㎡ 이상) 미만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사업장 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 발생량】

구 분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비 고
합 계	31,568.56	1,377.61	
매 립	12,311.74	697.06	
소 각	7,544.89	137.76	
재활용	5,335.09	268.64	
기 타	6,376.84	274.15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 사업비

구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총계	38,200	100.0	
공사비	26,584	69.6	
보상비	5,000	13.1	
설계비, 감리비 등	5,016	13.1	
기타(예비비 등)	1,600	4.2	

※ 추정사업비는 감정평가 또는 실시설계 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계	38,200	1,000	10,000	16,000	7,400	3,800	
단 지 조 성	조 성 비	26,584	698	6,957	11,133	4,678	3,118
	용 지 비	5,000	130	1,310	2,095	1,465	-
	기타비용	6,616	172	1,733	2,772	1,257	682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변경없음)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붙임2(변경)

1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게재생략(변경없음)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 설 개 요	비 고
용수 공급 시설	신설배수지	· V=250m ³ (예정)	
	송수관로	· D100mm, L=864m	

14. 지형도면 : 게재생략(변경없음)

15. 관계도서는 태백시 공공사업과(☎033-550-37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황지동)
(위탁 시행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 사업시행자의 성명 : 태백시(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계획적·체계적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를 통한 안정적 사업실현
- 신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기업유치로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현황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태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사업화 방안을 검토

가. 사업의 개요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99,736.9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27,462.3	63.8	•유상공급 면적의 50%이상 산업용지 확보
지 원 시 설 용 지		2,258.5	1.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0,016.1	35.1	
	도로	34,244.4	17.2	•계획기준: 8% 이상
	주차장	1,499.4	0.8	•계획기준: 0.6% 이상
	공원	654.9	0.3	•1개소
	녹지	17,787.1	8.9	•계획기준: 9.5% 미만
	가압펌프장	-	-	•112.3m ² , 녹지 내 중복 결정으로 면적에서 제외
	배수지	11,637.1	5.8	•1개소
	저류지	4,193.2	2.1	•1개소

주) 토지이용계획표상 도로 면적은 구역 내 북측 도로부지를 포함한 면적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55-1번지 일원
- 면 적 : 199,736.9㎡

5. 사업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행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중앙 및 당해 지방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99,736.9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27,462.3	63.8	•분양 예정
지 원 시 설 용 지		2,258.5	1.1	•분양 예정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0,016.1	35.1	
	도로	34,244.4	17.2	•태백시에 무상귀속
	주차장	1,499.4	0.8	•태백시에 무상귀속
	공원	654.9	0.3	•태백시에 무상귀속
	녹지	17,787.1	8.9	•태백시에 무상귀속
	가압펌프장	—	—	•태백시에 무상귀속 (112.3㎡, 녹지 내 중복 결정으로 면적에서 제외)
	배수지	11,637.1	5.8	•태백시에 무상귀속
	저류지	4,193.2	2.1	•태백시에 무상귀속

주) 토지이용계획표상 도로 면적은 구역 내 북측 도로부지를 포함한 면적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승인 고시 붙임 1과 같음

9.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개발계획 승인 고시 붙임 2과 같음

10. 관계도서는 태백시 공공사업과(☎033-550-37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99,736.9	-	199,736.9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199,736.9	-	199,736.9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1,856	34,244.4	1	578	12,233.5	4	422	4,913.5	3	856	17,097.4
중로	5	1,192	21,715.0	1	578	12,233.5	3	261	4,459.6	1	353	5,021.9
소로	3	664	12,529.4	-	-	-	1	161	453.9	2	503	12,075.5

주) 도로의 노선수, 연장, 면적은 구역내 합계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8개 노선				12,750 (1,856)	-	-				
중 로		5개 노선				12,086 (1,192)	-	-				
기정	중로	1	8	8~21 (21)	보조 간선도로	11,459 (578)	5호광장 통동344-3도	대로3-3 동점동139-7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강고85-111호 (1985.11.04.)	
기정	중로	2	1	17	집산도로	104 (91)	중로1-8 철암동299-4전	중로3-1 철암동254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중로	2	2	17	집산도로	24	중로1-8 철암동235-4전	철암동303-7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46	철암동254전	소로1-1 철암동257-2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중로	3	1	14	집산도로	353	소로3-142 철암동274-14	철암동254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로	3개 노선					664	-	-				
기정	소로	3	1	11	국지도로	495	철암동 290-1전	철암동251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	철암동257전	철암동258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소로	2	1	9~12 (4~6)	국지도로	161	철암동278-10도	소로3-142 철암동290-2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강고85-111호 (1985.11.04.)	
기정	소로	3	142	6	국지도로	279	소로2-1 철암동290-2전	철암동268-10전	일반 도로	산업 시설용지	강고85-111호 (1985.11.04.)	단지 외

□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1,499.4	-	1,499.4	-	
기정	1	노외주차장1	철암동 255-1 일원	1,499.4	-	1,499.4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개소	-	654.9	-	654.9	-	
기정	1	소공원	철암동 255-1 일원	654.9	-	654.9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개소	-	-	17,787.1	-	17,787.1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56 일원	1,462.8	-	1,462.8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62 일원	2,558.3	-	2,558.3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산3-3 일원	4,744.0	—	4,744.0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55-3 일원	3,539.6	—	3,539.6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303-4 일원	3,197.5	—	3,197.5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가압장 중복결 정 (112.3 ㎡)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철암동 298-10 일원	2,284.9	—	2,284.9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11,749.4	－	11,749.4	－	
기정	1	수도 공급 설비	배수지	철암동 250 일원	11,637.1	－	11,637.1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기정	2	수도 공급 설비	가압장	철암동 237-2 일원	112.3	－	112.3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완충녹지 중복결정 (112.3㎡)

라. 방재시설

□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 개소	4,193.2	—	4,193.2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철암동 288-1 일원	4,193.2	—	4,193.2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태백시 철암동 255-1번지 일원	199,736.9	-	199,736.9	태백시고시 제2023-84호 (23.10.26.)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와 같음 :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와 같음 : 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²)	
합 계		127,462.3	－	－	127,462.3	
산업	산업1	58,392.9	1	철암동 산3-1 일원	58,392.9	
	산업2	27,787.5	2	철암동 257-1 일원	27,787.5	
	산업3	13,520.0	3	철암동 294-1 일원	13,520.0	
	산업4	27,761.9	4	철암동 303-8 일원	27,761.9	

2)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2,258.5	—	—	2,258.5	
지원	지원1	2,258.5	1	철암동 255-1 일원	2,258.5	

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499.4	—	—	1,499.4	
주차	주차1	1,499.4	1	철암동 255-1 일원	1,499.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산업	산업1~ 산업4	용 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수련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발전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용 적 율		· 35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높 이		· 30m 이하	
		배 치		· 「태백시 건축 조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형 태			
		색 채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 및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2)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원	지원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나목 종교집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주유소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용 적 율		35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높 이	30m 이하	
		배 치	「태백시 건축 조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형 태		
		색 채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 및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	주차1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및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법」 및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불허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용 적 율	- 350%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높 이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2층 이상	
		배 치	「태백시 건축 조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형 태		
		색 채		
		건축선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타위치		
산업	산업1	1	일부 구간	교차로구간 및 감속차로변 등에 따른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지침도 참조
	산업2	2			
	산업3	3			
	산업4	4			
지원	지원1	1			
주차	주차1	1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침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6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기타시설용지, 제5장 공공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 ②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또한,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 ③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및 승인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⑥ 단, 시행지침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지침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 ②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가구”라 함은 토지이용에 의하여 구분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획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나의 대지로 개발토록 하는 일단의 건축가능 범위를 말한다.

- ③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허용용도”이라 함은 당해 획지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2. “불허용도” 이라 함은 법규 및 관련규정상 허용되는 용도일지라도 도시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필지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2. “용적률”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3. “최고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지 않는 블록에 대해서는 관련규제를 넘지 않는 가장 높은 층수를 말한다.
4. “최저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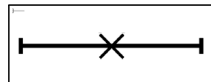
⑤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한계선” 이라 함은 그 선상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2. “건축물 전면” 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⑥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 진출입구” 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 위치를 말한다. 필요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2.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이 구간에서는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3. “전면도로” 라 함은 건축물의 전면이 향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⑦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① 산업시설용지의 모든 획지는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전면도로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대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대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①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의 가구번호는 산업1~산업4로 구분한다.
-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도면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	산업1 ~산업4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발전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를 것)	
		용적률	35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를 것)	
		높 이	30m 이하	
		배 치	「태백시 건축 조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형 태		
		색 채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 및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③ 각 용지별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다음과 같이 지침도에 표기한다.

건축물 용도		산업시설용지		용 도 : 산업시설용지 용적률 : 350% 이하 건폐율 : 70% 이하 최고층수 : 제한없음 최저층수 : 제한없음
용적률	최고층수	350% 이하	—	
건폐율	최저층수	70% 이하	—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 ② 측면에 발생하는 측면이격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격한 공간에 식재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③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시행령 및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 ④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이나 도로에 많이 접한면으로 향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한다.
- ⑤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변에 면하는 대지 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각부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건물의 전면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의 형태·재료·색깔 등이 질서있게 연출되고 가로와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 (건축물 외벽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한다.
- ②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③ 건축물의 외벽에는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7조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

- ① 입면의 형태와 연속성이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블록 단위별 통일감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

< 교통처리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①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 관련 법령 및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심의내용에 따른다.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0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노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모퉁이변은 차량 진·출입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②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단 차량 진·출입이 불허된 구간이라도 비상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을 허용한다.

제11조 (조경에 관한 사항)

- ① 대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과 함께 조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① 지원시설용지는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 ②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허용하며, 획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획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③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획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획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①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의 가구번호는 지원1로 구분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도면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원	지원1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나목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주유소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용적률	350% 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높 이	30m 이하	
		배 치	「태백시 건축 조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형 태		
		색 채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 및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③ 각 용지별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다음과 같이 지침도에 표기한다.

건축물 용도		지원시설용지		용 도 : 지원시설용지
용적률	최고층수	350% 이하	—	용적률 : 350% 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70% 이하	—	건폐율 : 70% 이하
				최고층수 : 제한없음
				최저층수 : 제한없음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② 측면에 발생하는 측면이격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격한 공간에 식재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③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시행령 및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 ④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이나 도로에 많이 접한면으로 향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한다.
- ⑤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변에 면하는 대지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각부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건물의 전면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 ①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계획하여 건축한다.
- ②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5조 (건축물 외벽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한다.
- ②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담장 및 대문에 관한 사항)

- ①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 교통처리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차량진입이 불허된 구간이라도 비상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을 허용한다.

제8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①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령 및 「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심의내용에 따른다.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제9조 (조경에 관한 사항)

- ① 전면 공지에 간의 휴게시설과 함께 조경시설을 권장한다.
- ② 지역 녹화의 의도에 따라 옥상정원을 권장한다.

제4장 기타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기타시설용지는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다음과 같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	주차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및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법」 및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용적률		－ 350%이하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를 것)	
		높 이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2층 이상	
		배 치		「태백시 건축 조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형 태			
		색 채			
		건축선		「태백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② 각 용지별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다음과 같이 지침도에 표기한다.

건축물의 용도	가구번호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최저층수
주차장	주차1	90%이하	350%이하	-	-

③ 각 용지별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다음과 같이 지침도에 표기한다.

건축물 용도		주차장		용 도 : 주차장 용적률 : 350% 이하 건폐율 : 70% 이하 최고층수 : 제한없음 최저층수 : 제한없음
용적률	최고층수	350% 이하	-	
건폐율	최저층수	70% 이하	-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침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 교통처리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시설용지

제1조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태백시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2조 (공원의 성격)

① 소공원은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휴식, 교류,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하도록 한다.

제3조 (공원의 시설물 등 조성지침)

① 각 공간구성에 맞는 휴게시설, 조명시설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모든 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다.

③ 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6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①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별적인 건축물 인·허가시 수도법, 하수도법, 물의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본 사업 준공 후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3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신규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기관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차량 진출입구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4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심의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태백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공원조성계획 결정도서(변경없음)

가. 1호 소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1호 소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규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 계		654.9	100.0			
소계		128.3	19.6			
도로 및 광장	도로	104.3	15.9			
휴양시설	휴게공간	16.0	2.5			
운동시설	운동공간	8.0	1.2			
녹지 및 기타	녹지	526.6	80.4			

2) 1호 소공원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m ²)	수량	비 고
총 계				654.9		
도로 및 광장	소 계			104.3		
	-	도로	전지역	104.3		
세 부 시 설	소 계			16.0		
	가-1	휴게쉼터	진입로 인근	16.0		
	①	파고라	가-1		1개소	
	②	등의자	가-1		4개소	
	③	평의자	가-1		4개소	
	소 계			8.0		
	나-1	운동공간	진입로 인근	8.0		
	④	체력단련시설	나-1		1개소	
	⑤	체력단련시설	나-1		1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526.6		
	-	녹지	전지역	526.6		

3) 도로조서

등 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²)	부지면적(m ²)	비 고
총 계				47.4	104.3	
소로	3	진1	2.2	47.4	104.3	

붙임 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기 정)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03,352.1	199,736.9					203,352.1	199,736.9						
1	태백시 철암동	234	도	100.0	10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4	도	100.0	10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	태백시 철암동	234-3	도	193.0	19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4-3	도	193.0	19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3	태백시 철암동	234-4	도	892.0	89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4-4	도	892.0	89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	태백시 철암동	235-4	전	839.0	83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5-4	전	839.0	83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	태백시 철암동	235-6	도	1,125.0	1,12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5-6	도	1,125.0	1,12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	태백시 철암동	235-7	철	20.0	20.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35-7	철	20.0	20.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태백시 철암동	235-8	잡	734.0	73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5-8	잡	734.0	73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	태백시 철암동	236-3	잡	23.0	2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6-3	잡	23.0	2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	태백시 철암동	236-4	잡	85.0	8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6-4	잡	85.0	8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0	태백시 철암동	237-2	대	273.0	27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7-2	대	273.0	27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1	태백시 철암동	237-3	대	74.0	7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7-3	대	74.0	7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	태백시 철암동	237-4	철	130.0	130.0	박**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철암리 ***	237-4	철	130.0	13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3	태백시 철암동	238-3	잡	28.0	2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8-3	잡	28.0	2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4	태백시 철암동	238-4	도	440.0	44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8-4	도	440.0	44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5	태백시 철암동	238-13	전	241.0	241.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38-13	전	241.0	24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6	태백시 철암동	238-14	철	90.0	90.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38-14	철	90.0	90.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7	태백시 철암동	238-15	철	40.0	40.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38-15	철	40.0	40.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8	태백시 철암동	238-16	도	144.0	14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8-16	도	144.0	14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9	태백시 철암동	238-18	도	480.0	48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38-18	도	480.0	48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기 정)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태백시 철암동	239-5	전	566.0	566.0	김**	강원도 삼척국 상장면 적각리 **	239-5	전	566.0	56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1	태백시 철암동	246-1	전	1,027.0	347.8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46-1	전	1,027.0	347.8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2	태백시 철암동	247-1	전	3,034.0	2,70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47-1	전	3,034.0	2,70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3	태백시 철암동	248-3	전	2,272.0	1,336.4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48-3	전	2,272.0	2,27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935.6	박**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										
24	태백시 철암동	249	전	4,876.0	4,87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49	전	4,876.0	4,87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5	태백시 철암동	250-2	전	662.0	21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50-2	전	662.0	21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6	태백시 철암동	250-3	전	10,935.0	10,05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50-3	전	10,935.0	10,05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7	태백시 철암동	251	전	2,965.0	1,482.5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51	전	2,965.0	2,96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482.5	홍**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 ***동 ***호										
28	태백시 철암동	252-1	전	2,348.0	2,348.0	강**	강원도 태백시 감천로 *, *동 ***호	252-1	전	2,348.0	2,34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9	태백시 철암동	252-3	잡	1,160.0	1,16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252-3	잡	1,160.0	1,16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30	태백시 철암동	252-4	전	443.0	443.0	김**	강원도 삼척읍 ***	252-4	전	443.0	44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미등 기
31	태백시 철암동	252-5	전	46.0	46.0	강**	강원도 태백시 감천로 *, *동 ***호	252-5	전	46.0	4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32	태백시 철암동	252-7	철	465.7	465.7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52-7	철	465.7	465.7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3	태백시 철암동	252-8	철	219.5	219.5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52-8	철	219.5	219.5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	태백시 철암동	252-9	철	70.5	70.5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52-9	철	70.5	70.5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	태백시 철암동	252-10	철	900.8	900.8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52-10	철	900.8	900.8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6	태백시 철암동	252-13	철	30.7	30.7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52-13	철	30.7	30.7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7	태백시 철암동	252-14	철	52.0	52.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52-14	철	52.0	52.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8	태백시 철암동	252-15	철	4.9	4.9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52-15	철	4.9	4.9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기 정)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9	태백시 철암동	253-1	전	575.0	575.0	정**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53-1	전	575.0	57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0	태백시 철암동	254	전	2,909.0	2,909.0	정**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54	전	2,909.0	2,90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1	태백시 철암동	255	전	3,765.0	3,765.0	고**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 ***동 ***호	255	전	3,765.0	3,76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2	태백시 철암동	255-1	전	12,164.0	12,164.0	장**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55-1	전	12,164.0	12,16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3	태백시 철암동	255-2	임	2,110.0	2,110.0	장**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55-2	임	2,110.0	2,11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4	태백시 철암동	255-3	임	304.0	304.0	장**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55-3	임	304.0	30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5	태백시 철암동	255-4	전	1,595.0	1,595.0	김**	강원도 태백시 계산*길 **	255-4	전	1,595.0	1,59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6	태백시 철암동	256-1	전	1,112.0	1,112.0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56-1	전	1,112.0	1,11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7	태백시 철암동	257	전	5,970.0	5,970.0	고**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 ***동 ***호	257	전	5,970.0	5,97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8	태백시 철암동	257-1	전	992.0	99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57-1	전	992.0	99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49	태백시 철암동	257-4	전	735.0	73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57-4	전	735.0	73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0	태백시 철암동	262-1	전	33.1	33.1	홍**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 ***동 ***호	262-1	전	33.1	33.1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1	태백시 철암동	263	전	357.0	357.0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63	전	357.0	35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2	태백시 철암동	264	전	1,881.0	1,88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64	전	1,881.0	1,88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3	태백시 철암동	265	전	5,484.0	5,484.0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65	전	5,484.0	5,48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4	태백시 철암동	265-2	임	1,132.9	1,132.9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65-2	임	1,132.9	1,132.9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5	태백시 철암동	266-2	임	2,239.0	2,23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66-2	임	2,239.0	2,23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6	태백시 철암동	266-8	전	208.8	208.8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66-8	전	208.8	208.8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7	태백시 철암동	266-9	묘	2,840.8	2,840.8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66-9	묘	2,840.8	2,840.8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8	태백시 철암동	274-20	도	79.9	79.9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74-20	도	79.9	79.9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59	태백시 철암동	279-9	도	627.4	627.4	국(건설 부)		279-9	도	627.4	627.4	국(건설 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기 정)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60	태백시 철암동	283-33	도	58.9	58.9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83-33	도	58.9	58.9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1	태백시 철암동	288-1	전	3,640.0	3,640.0	홍**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 ***동 ***호	288-1	전	3,640.0	3,64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2	태백시 철암동	290-2	전	2,996.0	141.1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0-2	전	2,996.0	2,99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854.9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63	태백시 철암동	290-5	전	5,160.3	5,160.3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90-5	전	5,160.3	5,160.3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4	태백시 철암동	290-6	전	408.5	408.5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0-6	전	408.5	408.5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5	태백시 철암동	291	대	635.0	635.0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91	대	635.0	63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6	태백시 철암동	292	전	810.0	810.0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92	전	810.0	81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7	태백시 철암동	293	대	595.0	595.0	김**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293	대	595.0	59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8	태백시 철암동	294-1	잡	6,793.0	6,793.0	김**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 ***동 ***호	294-1	잡	6,793.0	6,79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69	태백시 철암동	294-2	도	105.0	105.0	국(건설 부)		294-2	도	105.0	105.0	국(건설 부)						
70	태백시 철암동	294-5	전	483.0	483.0	정**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94-5	전	483.0	48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71	태백시 철암동	294-6	도	623.0	62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4-6	도	623.0	62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72	태백시 철암동	294-7	도	166.0	166.0	국(건설 교통부)		294-7	도	166.0	166.0	국(건설 교통부)						
73	태백시 철암동	294-9	도	34.0	3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4-9	도	34.0	3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74	태백시 철암동	294-10	전	473.0	473.0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294-10	전	473.0	473.0	한국철 도 시설공 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75	태백시 철암동	295-2	도	138.0	138.0	국(건설 부)		295-2	도	138.0	138.0	국(건설 부)						
76	태백시 철암동	295-9	도	3,847.0	3,84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5-9	도	3,847.0	3,84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77	태백시 철암동	295-10	도	272.0	27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5-10	도	272.0	27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78	태백시 철암동	295-11	도	753.0	75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5-11	도	753.0	75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기 정)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9	태백시 철암동	295-12	도	375.0	37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5-12	도	375.0	37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0	태백시 철암동	295-13	전	1,883.0	1,883.0	정**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95-13	전	1,883.0	1,88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1	태백시 철암동	297	전	635.0	63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7	전	635.0	63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2	태백시 철암동	298-2	도	67.0	6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8-2	도	67.0	6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3	태백시 철암동	298-3	도	106.0	106.0	국(건설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98-3	도	106.0	106.0	국(건설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84	태백시 철암동	298-4	잡	655.0	655.0	김**	경기도 과주시 한빛로 **, ***동 ***호	298-4	잡	655.0	65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5	태백시 철암동	298-7	대	659.0	659.0	정**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98-7	대	659.0	65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6	태백시 철암동	298-12	도	215.0	21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8-12	도	215.0	21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7	태백시 철암동	298-14	도	716.0	71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8-14	도	716.0	71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88	태백시 철암동	298-16	철	462.0	462.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98-16	철	462.0	462.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89	태백시 철암동	298-17	전	1,055.0	1,055.0	정**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98-17	전	1,055.0	1,05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0	태백시 철암동	298-18	대	125.0	125.0	정**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98-18	대	125.0	12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1	태백시 철암동	298-19	전	3,050.0	3,050.0	정**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98-19	전	3,050.0	3,05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2	태백시 철암동	299-1	잡	205.0	20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9-1	잡	205.0	20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3	태백시 철암동	299-12	도	62.0	62.0	국(건설 부)		299-12	도	62.0	62.0	국(건설 부)					
94	태백시 철암동	299-14	도	188.0	18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9-14	도	188.0	18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5	태백시 철암동	299-15	도	170.0	17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299-15	도	170.0	17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6	태백시 철암동	299-16	도	80.0	80.0	국(건설 부)		299-16	도	80.0	80.0	국(건설 부)					
97	태백시 철암동	299-18	전	6,806.0	6,806.0	***** *문중	강원도 태백시 머리굴길 *	299-18	전	6,806.0	6,80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8	태백시 철암동	300	대	655.0	655.0	***** *문중	강원도 태백시 머리굴길 *	300	대	655.0	65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99	태백시 철암동	303	전	156.0	156.0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 ***호	303	전	156.0	15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00	태백시 철암동	303-2	도	107.0	10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303-2	도	107.0	10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기 정)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1	태백시 철암동	303-5	임	1,386.0	1,38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303-5	임	1,386.0	1,38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02	태백시 철암동	303-6	도	885.0	88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303-6	도	885.0	88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03	태백시 철암동	303-7	임	2,881.0	2,88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303-7	임	2,881.0	2,88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04	태백시 철암동	303-8	임	5,520.0	5,52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303-8	임	5,520.0	5,52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05	태백시 철암동	303-9	임	154.0	154.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3-9	임	154.0	15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06	태백시 철암동	303-10	철	536.0	536.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03-10	철	536.0	536.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읍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07	태백시 철암동	387-28	도	1,210.4	1,210.4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7-28	도	1,210.4	1,210.4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08	태백시 철암동	388-5	천	1,855.0	1,855.0	국(환경 부)		388-5	천	1,855.0	1,855.0	국(환경 부)					
109	태백시 철암동	389-14	전	14.0	14.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14	전	14.0	1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0	태백시 철암동	389-15	도	8.0	8.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15	도	8.0	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1	태백시 철암동	389-16	전	23.0	23.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16	전	23.0	2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2	태백시 철암동	389-17	도	4.0	4.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17	도	4.0	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3	태백시 철암동	389-18	도	71.0	71.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18	도	71.0	7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4	태백시 철암동	389-19	잡	62.0	62.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19	잡	62.0	6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5	태백시 철암동	389-20	도	241.0	241.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20	도	241.0	24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6	태백시 철암동	389-21	도	16.0	16.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21	도	16.0	16.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117	태백시 철암동	389-22	도	27.0	27.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읍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22	도	27.0	2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기 정)						변 경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8	태백시 철암동	389-23	도	5.0	5.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23	도	5.0	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19	태백시 철암동	389-25	도	160.0	160.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25	도	160.0	160.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0	태백시 철암동	389-27	도	28.0	28.0	국(기획 재정부)	세종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89-27	도	28.0	2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1	태백시 철암동	403-179	도	375.0	375.0	국(건설 부)		403-179	도	375.0	375.0	국(건설 부)					
122	태백시 철암동	산2-11	임	538.0	53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산2-11	임	538.0	538.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3	태백시 철암동	산2-12	임	11,043.0	10,52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산2-12	임	11,043.0	10,52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4	태백시 철암동	산2-15	임	283.0	2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산2-15	임	283.0	27.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5	태백시 철암동	산2-16	철	1.0	0.34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산2-16	철	1.0	0.34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0.66	대한석탄 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0.66	대한석 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126	태백시 철암동	산3-1	임	24,033.0	24,033.0	홍**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동 ***호	산3-1	임	24,033.0	24,03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7	태백시 철암동	산3-4	철	319.0	319.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산3-4	철	319.0	319.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28	태백시 철암동	산3-5	임	6,605.0	6,605.0	***** *문중	강원도 태백시 머리굴길 *	산3-5	임	6,605.0	6,605.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29	태백시 철암동	산4-1	임	1,884.0	1,884.0	***** *문중	강원도 태백시 머리굴길 *	산4-1	임	1,884.0	1,884.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30	태백시 철암동	산4-3	철	96.0	96.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산4-3	철	96.0	96.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31	태백시 철암동	산6-2	임	1,091.0	1,09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산6-2	임	1,091.0	1,091.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32	태백시 철암동	산6-7	철	116.0	116.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산6-7	철	116.0	116.0	국(국토 교통부)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33	태백시 철암동	산7-4	임	282.0	282.0	장**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산7-4	임	282.0	282.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34	태백시 철암동	산8-2	임	9,413.0	9,413.0	김**	강원도 태백시 계산*길 **	산8-2	임	9,413.0	9,413.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135	태백시 철암동	산9-1	임	620.0	11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산9-1	임	620.0	119.0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 지장물조서(변경)

- 지장물조서(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 소	연락처	소유자명
1	태백시 철암동	294-1	기타 (간판)	공도암	2	식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2	태백시 철암동	257-4	석물이전비	자연석	1	식			
3	태백시 철암동	297	수목 (소나무)		2	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4	태백시 철암동	297	수목 (염나무)		400	주			
5	태백시 철암동	290-3	석물이전비	상석, 향로석, 비석	1	식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6	태백시 철암동	247-1	기타 (창고)	판넬조(1*2)	2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7	태백시 철암동	247-1	수목 (복분자)		200	주			
8	태백시 철암동	237-2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연와조기와강판	119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9	태백시 철암동	237-2	건(축)물 (주택)	블럭조강판	36	㎡			
10	태백시 철암동	237-2	건(축)물 (다용도실)	블럭조강판	10	㎡			
11	태백시 철암동	237-2	건(축)물 (현관 및 화장실)	블럭조강판	10	㎡			
12	태백시 철암동	237-2	건(축)물 (창고)	조립식판넬	7	㎡			
13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다용도실)	조립식 판넬조 아크릴지붕	40	㎡			
14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차양)	철과이프 폴리카 보네이트(14.5*1.8)	26	㎡			
15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건사)	철과이프 그물망 (4*6.1)	24	식			
16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바닥포장)	콘크리트	104	식			
17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바닥포장)	쇄석	200	식			
18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건사)	목조	1	식			
19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건사)	조립식	2	식			
20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외등)		4	식			
21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담장)	조립식 판넬	11	M			
22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간판)	굴사랑 맛사랑	1	식			
23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오수처리시설)	10m/일, FRP, 생물막경과법	1	식			
24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배나무)		1	주			
25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대추나무)		2	주			
26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잣나무)		9	주			
27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참나무)		1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28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산수유)		1	주			
29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은행나무)		2	주			
30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복숭아)		2	주			
31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염나무)		6	주			
32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가시오가피)		1	군			
33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매화)		1	군			
34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진달래)		15	주			
35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가시오가피)		1	주			
36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정원수)		2	군			
37	태백시 철암동	237-2	수목 (벗나무)		1	주			
38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화단)	자연석	2	식			
39	태백시 철암동	237-2	기타 (조경석)		6	식			
40	태백시 철암동	237-2	휴업 (영업손실)	굴사랑 맞사랑 (543-23-01408)	1	식			
41	태백시 철암동	237-2	이주정착금	주거용건축물평가액의 30%	1	식			
42	태백시 철암동	237-2	이사비		1	식			
43	태백시 철암동	237-2	주거이전비		1	인			
44	태백시 철암동	254	기타 (창고)	목조 함석지붕 (3*4)	12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태백시
45	태백시 철암동	254	기타 (창고)	목조 스트리트지붕 (1.5*3)	4.5	㎡			
46	태백시 철암동	254	기타 (계사)	철과이프 천막지붕 (4*4/2)	8	㎡			
47	태백시 철암동	254	기타 (울타리)	목조그물망	200	M			
48	태백시 철암동	254	농작물 (정구지,산마늘)		40	㎡			
49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개드릅나무)		22	주			
50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복숭아나무)		15	주			
51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사과나무)		5	주			
52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오가피나무)		7	주			
53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주목)		1	주			
54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살구나무)		2	주			
55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배나무)		1	주			
56	태백시 철암동	254	수목 (초피나무)		1	주			
57	태백시 철암동	266-1	석물이전비	비석,자연석기초	1	식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태백시
58	태백시 철암동	266-1	석물이전비	비석	1	식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1		태백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59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회양목)		8	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60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주목)		2	주			
61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소나무)		2	주			
62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배나무)		2	주			
63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회양목)		8	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64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주목)		2	주			
65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소나무)		2	주			
66	태백시 철암동	250-2	수목 (배나무)		2	주			
67	태백시 철암동	250-2	석물이전비 (상석+향석)	-	5	식			
68	태백시 철암동	250-2	석물이전비 (받침석)	-	1	식			
69	태백시 철암동	250-2	석물이전비 (향석)	-	1	식			
70	태백시 철암동	250-2	석물이전비 (향석)	-	1	식			
71	태백시 철암동	250-2	가묘	-	4	기			
72	태백시 철암동	250-2	조경석축	전방					
73	태백시 철암동	250-2	조경석축	후방					
74	태백시 철암동	250-2	잡비(잔디)	-					
75	태백시 철암동	250-2	석물이전비 (경계석)	1번					
76	태백시 철암동	250-2	석물이전비 (경계석)	2번					
77	태백시 철암동	250-2	잣나무	-	5	주			
78	태백시 철암동	250-2	철죽	-	43	주			
79	태백시 철암동	250-2	깎돌	-	10	㎡			
80	태백시 철암동	250-2	울타리망	-	60	M			
81	태백시 철암동	250-2	밤나무	10년생	2	주			
82	태백시 철암동	250-2	산초나무	5년생	1	주			
83	태백시 철암동	250-2	회양목		10	주			
84	태백시 철암동	250-2	염나무	5년생	15	주			
85	태백시 철암동	250-2	자두나무	5년생	15	주			
86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 (정자)	철파이프 천막 (2.4*2.4)	6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87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 (정자)	철파이프 강판 (3.1*2)	6	㎡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88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 (차양)	목조 강판 (11.1*1.3)	14	㎡			
89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 (표고목)		1	식			
90	태백시 철암동	300	동산의이전비 (동산이전비)	화목	1	식			
91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 (솔겔이)		2	식			
92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 (견사)	블럭조	1	식			
93	태백시 철암동	300	축산보상 (축산손실)	토종별(38군)	1	식			
94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머루나무)	지지대 포함	2	주			
95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사과나무)		3	주			
96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배나무)		2	주			
97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엄나무)		63	주			
98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사과나무)		3	주			
99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백일홍)		1	주			
100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가시오가피)		1	주			
101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복숭아)		4	주			
102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대추나무)		3	주			
103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사철나무)		1	주			
104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살구나무)		2	주			
105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복숭아)		29	주			
106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자두나무)		7	주			
107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앵두나무)		8	군			
108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웃나무)		8	주			
109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오가피)		8	주			
110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마가목)		1	주			
111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고염나무)		3	주			
112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대추나무)		4	주			
113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배나무)		2	주			
114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드릅)		50	주			
115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오미자)	지지대 포함	20	주			
116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사과나무)		3	주			
117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엄나무)		70	주			
118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잣나무)		1	주			
119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장미)		1	주			
120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회양목)		1	주			
121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별나무)		4	주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소유자명
122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옻나무)		5	주			
123	태백시 철암동	300	주거이전비		2.00	인			
124	태백시 철암동	300	이사비		59.94	㎡			
125	태백시 철암동	산3-1	농작물 (장뇌삼)	14년	1,984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126	태백시 철암동	산3-1	기타 (울타리)	철망,그물	150	㎡			
127	태백시 철암동	산3-1	수목 (옻나무)		4	주			
128	태백시 철암동	산3-1	수목 (옻나무)		1	주			
129	태백시 철암동	산3-1	수목 (참드릅나무)		20	주			
130	태백시 철암동	303-8	기타 (울타리)	파이프그물	80	M			
131	태백시 철암동	303-8	농작물 (등굴레,당귀)	3년	60	㎡			
132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회양목)		2	주			
133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옻나무)		9	주			
134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오가피나무)		1	주			
135	태백시 철암동	303-8	수목 (앵두나무)		1	주			
136	태백시 철암동	299-18	기타 (울타리)	파이프그물	80	M			
137	태백시 철암동	299-18	농작물 (등굴레)	3년	66	㎡			
138	태백시 철암동	299-18	수목 (접작약)	7년	50	주			
139	태백시 철암동	257	기타 (전기목책기)		270	M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140	태백시 철암동	257	농작물 (약초)	청출백출	36	㎡			
141	태백시 철암동	257	농작물 (고사리, 더덕 등)		300	㎡			
142	태백시 철암동	257	농작물 (장뇌삼)	3년	30	㎡			
143	태백시 철암동	257	기타 (창고)	목조합석지붕	8	㎡			
144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참배나무)	10년생	1	주			
145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개두릅나무)	8년생	200	주			
146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아구배나무)	12년생	3	주			
147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참드릅나무)	8년생	300	주			
148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대추나무)	6년생	1	주			
149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뽕나무)	5년생	1	주			
150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자두나무)	7년생	5	주			
151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밤나무)	10년생	5	주			
152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밤나무)	3년생	4	주			
153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보리수나무)	5년생	1	주			
154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호두나무)	3년생	2	주			
155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사과나무)	8년생	12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156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아로니아)	5년생	3	주			
157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 (산초나무)		6	주			
158	태백시 철암동	303-8	석물이전비 (접상석)	화강석(1.1*0.7*0.2)	1	식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159	태백시 철암동	303-8	석물이전비 (향로석)	화강석	1	식			
160	태백시 철암동	303-8	석물이전비 (접상석)	화강석(1.1*0.7*0.2)	1	식			
161	태백시 철암동	303-8	석물이전비 (향로석)	화강석	1	식			
162	태백시 철암동	산2-12	석물이전비 (석축)	견치석(H0.3)	16	M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163	태백시 철암동	산2-12	석물이전비 (접상석)	화강석(0.9*0.6*0.15)	1	식			
164	태백시 철암동	산2-12	석물이전비 (향로석)	화강석	1	식			
165	태백시 철암동	248-3	기타 (움막)	목조	4	㎡			
166	태백시 철암동	248-3	기타 (울타리)	목조그물망	300	M			
167	태백시 철암동	266-1	석물이전비 (상석,상석기초,향로석)	0.91*0.6*0.23	1	식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봉로 21		태백시
1	태백시 철암동	255	기타(창고)	목조합석(평상 포함) (2.2*3.1)	6.82	㎡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 ***동 ***호		고***
2	태백시 철암동	255	기타(창고)	목조 천막지붕	7.56	㎡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 ***동 ***호		고***
3	태백시 철암동	255	수목(낙엽송)		15	주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 ***동 ***호		고***
4	태백시 철암동	255	수목(소나무)		4	주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 ***동 ***호		고***
5	태백시 철암동	252-1	수목(드릅)		100	주	강원도 태백시 감천로 *, *동 ***호		강**
6	태백시 철암동	293	건(축)물 (주택)	목조(한식기외지붕틀)기외지붕(7* 12*1+1.7*1.9)	87.93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7	태백시 철암동	293	기타 (보일러실및화장실)	연외조기외지붕(12.1*2.5)	30.25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8	태백시 철암동	293	기타 (창고및화장실)	목조 스프레트지붕(1.7*4.0)	6.8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9	태백시 철암동	293	기타 (비닐하우스)	8*4.2	33.6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0	태백시 철암동	293	기타(조경석축)		56	M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1	태백시 철암동	293	기타(수도전)	개수도포함	1	식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2	태백시 철암동	293	기타(지하수)		1	식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3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소나무)		3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14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주목)		7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5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앵두나무)		4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6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팽나무)		3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7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염나무)		7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8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배나무)		2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19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회양목)		400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0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자두나무)		14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1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복숭아)		1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2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대추나무)		4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3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벚나무)		2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4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사철나무)		5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5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진달래)		100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6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오가피)		2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7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측백나무)		2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8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목련)		1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29	태백시 철암동	293	수목(사과나무)		2	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30	태백시 철암동	294-1	기타(비닐하우스)	6*18	108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동 ****호		김**
31	태백시 철암동	288-1	기타 (비닐하우스)	25*6	150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32	태백시 철암동	288-1	기타 (비닐하우스)	20*6	120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33	태백시 철암동	288-1	기타 (비닐하우스)	19*6	114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34	태백시 철암동	288-1	기타(관정)	관정사 포함	1	식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35	태백시 철암동	291	축산보상 (축사)	판넬조 및 목조 판넬 및 강관지붕(32*25-23.5)	776.5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36	태백시 철암동	291	기타(퇴비장)	블록 및 철제 강관지붕(4.5*4.5)	20.25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37	태백시 철암동	291	기타(창고)	목조 합석지붕 (11*10)	110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38	태백시 철암동	291	기타(사무실)	조립식판넬	23.5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39	태백시 철암동	291	기타(건조기)		1	식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0	태백시 철암동	291	기타(물탱크)	FRP,10톤	1	식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1	태백시 철암동	291	기타 (농업용전기)	5KW	1	식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2	태백시 철암동	291	기타(대문)	파이프문주2, 철제	1	식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3	태백시 철암동	291	수목(팽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4	태백시 철암동	291	수목(사과나무)		12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5	태백시 철암동	294-1	수목 (구썩팽나무)		4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6	태백시 철암동	288-1	수목(느릅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7	태백시 철암동	288-1	수목(잣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8	태백시 철암동	257	기타(울타리)	그물망	4,000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49	태백시 철암동	257	기타(창고)	목조 합석지붕 (3*2)	6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0	태백시 철암동	257	기타(전기목책)		150	㎡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1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사과나무)		13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2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밤나무)		5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3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대추나무)		11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4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돌베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5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엄나무)		85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6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드릅)		350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7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소나무)		7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8	태백시 철암동	257	수목(잣나무)		40	주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김**
59	태백시 철암동	300	건(축)물 (사당)	목조(한식지붕틀) 강판기와지붕	49.05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0	태백시 철암동	300	건(축)물 (주택)	연와조 기와강판	59.94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1	태백시 철암동	300	건(축)물 (창고및화장실)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17.11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2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대문)	목조(한식지붕틀)기와강판 (철제문주2,철제대문)	1	식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3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담장)	블록조(H: 1.8)	36.5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4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담장)	블록조(H: 0.6)	14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65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계단)	콘크리트	3	식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6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비석)	영묘제지붕보수기	1	식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7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비석)	영묘제건문	1	식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8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바닥포장)	콘크리트	320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69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바닥포장)	쇄석	30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70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수도전)	개수대포함	1	식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71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화단)	콘크리트	2	식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72	태백시 철암동	300	기타(덧돌)	콘크리트	12.06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73	태백시 철암동	300	수목(회양목)		1	주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74	태백시 철암동	300	수목(은행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75	태백시 철암동	산4-1	기타(창고)	목조(2*5)	10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		*****문 중
76	태백시 철암동	298-7	건(축)물 (주택)	연외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97.68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77	태백시 철암동	298-7	건(축)물 (창고)	각과이프 판넬조 강관지붕	15.9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78	태백시 철암동	298-7	건(축)물 (창고)	각과이프 판넬지붕 (8.8*5.0+2.5*2)	51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79	태백시 철암동	298-7	건(축)물 (창고, 화장실 및보일러실)	연외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43.36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0	태백시 철암동	298-7	건(축)물 (창고)	샷시조 등 (5.5*2.5)	13.75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1	태백시 철암동	298-7	건(축)물 (창고)	목조 강관 (6*5)	30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2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차양)	철과이프 강관 (2*2.3)	4.6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3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 (계사및창고)	판넬조 등 (5*2.4+6.3*3)	30.9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4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붕당)	콘크리트 난간대 포함	10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5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대문)	콘크리트 난간대 포함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6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계단)	콘크리트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87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담장)	적연와 경관웬스 (27*1.2)	32.4	M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8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 (스텐난간대)		12	M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89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수도전)	개수대포함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0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장독대)	화강석	10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1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 (저온저장고)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2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국기봉)	STS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3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아궁이)	벽돌조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4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 (농업용전기)	5KW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5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화단)	목조2,블록1, 경계석1	4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6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차양)	파이프강관 (2*2)	4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7	태백시 철암동	298-7	기타 (심야전기보일러)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8	태백시 철암동	298-19	기타(바닥포장)	콘크리트	210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99	태백시 철암동	298-19	동산의이전비 (동산이전비)	화목 등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0	태백시 철암동	298-19	기타 (고추건조대)		3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1	태백시 철암동	298-19	기타(평상)	각과이프 판넬	3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2	태백시 철암동	298-19	축산보상 (토종별)		7	군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3	태백시 철암동	298-19	기타(견사)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4	태백시 철암동	298-19	기타(물탱크)	FRP	1	식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5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산머루)	지지대포함	5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6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호두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7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자두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108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사과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09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복분자)		6	군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0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미선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1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복숭아)		3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2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자두나무)		8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3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염나무)		46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4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사과나무)		5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5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복숭아)		4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6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재배머루)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7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감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8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호두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19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복분자)		3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0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보리수)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1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꾸찌뽕)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2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사과나무)		4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3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배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4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연산홍)		26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5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자두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6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대추나무)		6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7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산머루)		4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28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돌배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129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포도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0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매화)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1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벚나무)		3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2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장미)		2	군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3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매화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4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살구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5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앵두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6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복분자)		9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7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자두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8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수국)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39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가시오가피)		10	군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0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배나무)		4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1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작약)		1	군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2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복숭아)	관상용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3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산초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4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개나리)		5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5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아카시아)		4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6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백일홍)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7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목단)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8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뽕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49	태백시 철암동	298-19	수목(다래)	지주대포함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EA)		소유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명
150	태백시 철암동	298-16	기타(울타리)	파이프그물	110	m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1	태백시 철암동	298-16	기타(울타리)	파이프능형철망	110	m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2	태백시 철암동	298-16	농작물 (곰취,곤드레나물등)		50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3	태백시 철암동	298-16	수목(밤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4	태백시 철암동	298-16	수목(별나무)		1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5	태백시 철암동	298-16	수목(헛개나무)		2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6	태백시 철암동	298-16	수목 (참드릅나무)		20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7	태백시 철암동	298-16	수목 (복분자나무)		57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8	태백시 철암동	298-16	수목 (가시오가피)		8	주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정**
159	태백시 철암동	산3-1	석물이전비 (석축)	견치석(H0.6)	17	M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정**
160	태백시 철암동	산3-1	석물이전비 (석축)	견치석(H0.6)	13	M	강원도 태백시 상철암길 ****		정**
161	태백시 철암동	산3-1	수목(낙엽송)		565.8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 ***동 ***호		홍**

삼척시 고시 제2024-208호

삼척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③)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23-61호(2023. 4. 2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③)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③)

나. 명칭: 삼척생활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삼척시장(체육과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의 면적: 91,809㎡

나. 사업의 규모

시설구분		부지면적(㎡)	비율(%)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1,809	100	2,268.76	4,606.30	
소 계		38,503	41.9	-	-	국민체육문화센터: 2,104.44 장비대여소동: 132.40 옥외계단실동: 41.61
시설	기반시설	9,590	10.5	-	-	
	편익시설	222	0.2	31.92	65.5	
	체육시설	28,691	31.2	2,236.8	4,540.9	
소 계		53,308	58.1	-	-	
녹지	계획녹지	8,961	9.8	-	-	
	원형보존녹지	44,345	48.3	-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22. 09. 23.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변경 사항 - 준공예정일 [기정] 2024. 09. 23. → [변경]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교동	252-2	체	2,347	7	삼척시	공				
2	교동	254	체	14,302	6	삼척시	공				
3	교동	256-4	체	240	240	삼척시	공				
4	교동	258	전	1,045	1,045	삼척시	공				
5	교동	259	전	641	641	삼척시	공				
6	교동	260	전	1,332	1,332	삼척시	공				
7	교동	261	전	911	547	삼척시	공				
8	교동	262	전	1,304	816	삼척시	공				
9	교동	262-1	대	612	612	삼척시	공				
10	교동	262-2	대	404	404	삼척시	공				
11	교동	262-4	과	3,323	3,323	삼척시	공				
12	교동	262-5	전	1,506	1,506	삼척시	공				
13	교동	262-9	대	222	219	삼척시	공				
14	교동	262-10	과	39	37	삼척시	공				
15	교동	262-11	전	180	173	삼척시	공				
16	교동	725	도	1,173	257	건설교통부	국				
17	교동	산24	임	1,720	1,720	삼척시	공				
18	교동	산24-1	임	4,364	4,364	삼척시	공				
19	교동	산24-3	임	4,264	4,264	삼척시	공				
20	교동	산24-4	임	5,468	5,468	삼척시	공				
21	교동	산24-11	임	10,145	10,145	삼척시	공				
22	교동	산24-12	임	1,653	1,653	삼척시	공				
23	교동	산24-18	임	4,998	4,998	삼척시	공				
24	교동	산25	임	119	119	삼척시	공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4, 240*동 ****호	방*용				
25	교동	산25-1	임	179	179	삼척시	공				
26	교동	산26	임	4,883	4,883	삼척시	공				
27	교동	산26-2	임	9,234	8,739	삼척시	공				
28	교동	산30	임	397	323	삼척시	공				
29	교동	산31-1	임	1,141	1,141	삼척시	공				
30	교동	산32	임	4,165	3,478	삼척시	공				
31	교동	산33	임	13,984	13,212	삼척시	공				
32	교동	산34	임	6,545	6,545	삼척시	공				
33	교동	산35	임	5,455	5,455	삼척시	공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34	교동	산37-1	임	6,651	3,958	삼척시	공				
합 계				114,946	91,809						

※ 기타(물건 등):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 참고 사항 】

■ 의제처리사항 협의 목록			
관련 실·과·소	협의(허가) 내용	문서 번호	허가기간
원주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6251(2021. 10. 21.)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동의)	비공개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비공개(협의일: 2022. 9. 7.)	-
삼척시청 농정과	농지전용	농정과-9290(2022. 5. 27.)호	-
삼척시청 산림과	산지전용	산림과-11215(2024. 6. 24.)호	2022. 6. 21. ~ 2025. 6. 30.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허가 등	2012-건축과-협의건축물-2 (2022. 8. 18.)	-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내역			
구 분	고시 번호	고시 일자	비 고
도시관리계획	삼척시 고시 제2022-11호	2022. 1. 21.	최초 결정
실시계획 인가	삼척시 고시 제2022-134호	2022. 9. 23.	최초 인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삼척시 고시 제2023-61호	2023. 4. 2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실시계획 인가	삼척시 고시 제2024-208호	2024. 9. 23.	실시계획 변경 인가

※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고시 제2024-177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영월군 고시 제2021-141호(2021.6.1.)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2-100호(2022.5.25.)로 실시계획 인가된 영월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영월군 지역개발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영 월 군 수

1. 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1)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 및 폐기물중간 재활용시설	북면 마차리 808-3번지 일원	25,005	감) 483.4	24,521.6	영월군고시 제2021-141호 (2021.06.01.)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면적 감소 - 25,005㎡ → 24,521.6㎡ 감) 483.4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 정정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808-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영월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명칭 : 북면 마차리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기정) 25,005.0㎡ → 변경) 24,521.6㎡ 감) 483.4㎡
(확정측량에따른 면적 감소)
- 도입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원환경(합) 대표이사 김명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 37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자 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총 19필지 → 5필지			30,390	24,521.6	25,005	감)483.4	24,521.6	-	-	-	-	-	
1	마차리	808-3	잡	324	-	324	감)324	-	김명자	주천면 관운리 687-1	㈜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영월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지상권	
2	마차리	808-5	잡	2,539	-	2,539	감)2,539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영월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지상권	
3	마차리	808-17	도	483	-	483	감)483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영월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지상권	
4	마차리	808-22	잡	593	-	593	감)593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	-	-	
5	마차리	808-23	잡	3,180	-	3,180	감)3,180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영월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지상권	
6	마차리	809-1	잡	784	-	784	감)784	-	김명자	주천면 관운리 687-1	㈜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영월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지상권	
7	마차리	809-3	잡	974	-	974	감)974	-	성원환경(합)	북면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자 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밤재로 378				
8	마차리	809-4	잡	260	-	260	감)260	-	김명자	주천면 관운리 687-1	-	-	-	
9	마차리	809-5	잡	252	-	252	감)252	-	김명자	주천면 관운리 687-1	-	-	-	
10	마차리	809-7	전	232	-	232	감)232	-	김명자	주천면 관운리 687-1	-	-	-	
11	마차리	809-8	잡	263	-	263	감)263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	-	-	
12	마차리	809-9	잡	1,010	-	1,010	감)1,010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	-	-	
13	마차리	811-1	구	58	-	58	감)58	-	국(농림축산 식품부)	-	-	-	-	
14	마차리	811-8	잡	2,570	-	2,570	감)2,570	-	국(기획재정부)	-	-	-	-	
15	마차리	산94-8	임	13,265	-	7,880	감)7,880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	-	-	
16	마차리	산94-9	임	548	-	548	감)548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	-	-	
17	마차리	산94-18	임	1,964	-	1,964	감)1,964	-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	-	-	
18	마차리	산102-3	임	595	-	595	감)595	-	국(산림청)	-	-	-	-	
19	마차리	산102-4	임	496	-	496	감)496	-	국(기획재정부)	-	-	-	-	
20	마차리	1594	장	-	16,620.6	-	증)16,620.6	16,620.6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808-3, 809-1, 809-3, 809-4, 809-5, 809-7, 809-8, 산94-9, 산94-18, 산102-4 합병 808-5, 808-17, 808-22, 808-23, 809-9, 811-8, 산94-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자 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산102-3, 분할	
21	마차리	1595	공	-	655	-	증)655	655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811-1 합병 808-5, 808-17, 809-9, 811-8, 분할
22	마차리	1596	도	-	1,342.8	-	증)1,342.8	1,342.8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808-5, 808-17, 808-23, 산102-3, 분할
23	마차리	1597	대	-	408.2	-	증)408.2	408.2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808-17, 808-23, 분할
24	마차리	1598	공	-	5,495	-	증)5,495	5,495	성원환경(합)	북면 밤재로 378					808-22, 808-23, 산94-8, 분할

고성군 고시 제2024-186호

고성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24-175호(2024.9.4.)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033-도보680-3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9월 26일

고 성 군 수

- 가. 고성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아래와 같음
- 나. 고성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건설도시과 비치)

【고성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고성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758	증) 9	51,767	10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995	감) 1	11,994	23.2	
	제2종 일반주거지역	39,341	증) 7	39,348	76.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22	증) 3	425	0.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94-1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38	200%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정정
②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32-63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9	200%	기존 건축물 부지 제척 등에 따른 면적 정정
③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6-24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01	250%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정정

④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산18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08	250%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으로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편입
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67-11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3	100%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7-48번지 일원	51,758	증) 9	51,767	2019.1.25. 고성군고시 제2019-10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①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7-48번지 일원	51,758 → 51,767㎡ 증) 9㎡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고 기존 건축물 부지 제척 등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669	대로 3-1 아야진리 467-4 일원	소로2-34 아야진리 645 일원	일반 도로	-	2012.7.20. 강원도고시 제2012-243호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330	중로 3-6 아야진리 129-22 일원	소로 2-34 아야진리 25-15 일원	일반 도로	-	2012.7.20. 강원도고시 제2012-243호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220	중로 3-6 아야진리 120-2 일원	소로 3-24 아야진리 산23 일원	일반 도로	-	2012.7.23. 고성군고시 제2012-37호	
변경	소로	2	47	8	국지 도로	220	중로 3-6 아야진리 120-2 일원	소로 3-24 아야진리 471-8 일원	일반 도로	-		중점명 변경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00	소로 2-48 아야진리 68-2 일원	아야진리 산20 일원	일반 도로	-	2012.7.23. 고성군고시 제2012-37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00	소로 2-48 아야진리 68-2 일원	아야진리 67-50 일원	일반 도로	-		종점명 변경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398	중로 3-6 아야진리 467-8 일원	소로 2-48 아야진리 66-8 일원	일반 도로	-	2012.7.23. 고성군고시 제2012-37호	
변경	소로	3	24	6	국지 도로	398	중로 3-6 아야진리 467-14 일원	소로 2-48 아야진리 66-8 일원	일반 도로	-		기점명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47	소로 2-47	종점명 변경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에 따른 종점명 정정
소로 3-16	소로 3-16	종점명 변경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에 따른 종점명 정정
소로 3-24	소로 3-24	기점명 변경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에 따른 기점명 정정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토성면 아야진리 23-1번지 일원	2,675	감) 3	2,672	2012.7.20. 강원도고시 제2012-243호	

○ 녹지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완충녹지	면적감소 - 2,675 → 2,672㎡ 감) 3㎡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 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토성면 아야진리 132-63번지 일원	2,089	감) 52	2,037	2019.1.25. 고성군고시 제2019-10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어린이공원	면적감소 - 면적: 2,089 → 2,037㎡ 감) 52㎡	기존 건축물 부지 제척 등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구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구 분	가 구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51,758	증) 9	51,767	
A	공동주택용지	토성면 아야진리 67-48번지 일원	39,341	감) 7	39,348	
B	공공시설용지	토성면 아야진리 129-22번지 일원	12,417	증) 2	12,419	도로, 공원, 녹지

○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구 분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1,758	증) 9	51,767	
A	공동주택용지	토성면 아야진리 67-48번지 일원	39,341	감) 7	39,348	
A-1	공동주택용지	토성면 아야진리 67-48번지 일원	39,341	감) 7	39,348	
B	공공시설용지	토성면 아야진리 129-22번지 일원	12,417	증) 2	12,419	
B-1	도로용지①(중로3-6)	토성면 아야진리 129-22번지 일원	8,175	감) 9	8,166	
B-2	도로용지②(소로3-24)	토성면 아야진리 471-8번지 일원	434	감) 13	421	
B-3	도로용지③(소로2-47)	토성면 아야진리 471-9번지 일원	625	증) 51	676	
B-4	도로용지④(소로1-5)	토성면 아야진리 129-51번지 일원	271	증) 1	270	
B-5	도로용지⑤(소로3-16)	토성면 아야진리 67-50번지 일원	211	증) 30	241	
B-6	어린이공원	토성면 아야진리 132-6번지 일원	2,090	감) 53	2,037	
B-7	완충녹지	토성면 아야진리 471-5번지 일원	611	감) 3	608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결정내용
A-1	토성면 아야진리 67-48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9층 이하
		배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롭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결정내용
		형태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채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 유도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도록 계획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단지내 조경	「건축법」 및 「고성군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출입 허용구간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및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고성 군관리계획(아야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건설도시과 비치)

【 10호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10호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토성면 아야진리 132-6번지 일원	2,089	감) 52	2,037	고성군고시 제2019-10호 (2019.01.25.)	

나.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구성비 (%)	비 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037	1,159	-	-	-	16	100.0	
공원시설 소계	1,159	1,159	-	-	-	16	56.9	
도로 및 광장	513	513	-	-	-	-	25.2	
휴양시설	89	89	-	-	-	7	4.4	
유흥시설	378	378	-	-	-	5	18.5	
운동시설	179	179	-	-	-	3	8.8	
공원관리시설	-	-	-	-	-	1	-	
녹지 및 기타	878	-	-	-	-	-	43.1	

다. 세부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037	—	—	16	
시설부지소계				1,159	—	—	16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소 계		513	—	—	—	
		도로		307	—	—	—	
		광장		206	—	—	—	
		가-1	광장	162	—	—	—	
		가-2	진입광장	44	—	—	—	
	휴양시 설	소 계		89	—	—	7	
		나-1	휴게쉼터A	43	—	—	—	
		나-2	휴게쉼터B	46	—	—	—	
		①	정자	—	—	—	1	
		②	파고라	—	—	—	1	
		③	등의자	—	—	—	5	
	유희시 설	소 계		378	—	—	5	
		다-1	어린이놀이터	357	—	—	—	
		다-2	모래놀이터	21	—	—	—	
		④	조합놀이대	—	—	—	1	
		⑤	흔들놀이시설	—	—	—	4	
	운동시 설	소 계		179	—	—	3	
		라-1	다목적구장	143	—	—	—	
		라-2	체력단련장A	23	—	—	—	
		라-3	체력단련장B	13	—	—	—	
		⑥	체력단련시설A	—	—	—	1	
		⑦	체력단련시설B	—	—	—	1	
		⑧	체력단련시설C	—	—	—	1	
	공원관 리시설	소 계		—	—	—	1	
		⑨	안내판	—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878	—	—	—		
	—	녹지	878	—	—	—		

2) 도로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 총괄표

등급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산책로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7	81.0	307.0							5	74.0	289.0	2	7.0	18.0
대로	신설	—	—	—	—	—	—	—	—	—	—	—	—	—	—	—
중로	신설	—	—	—	—	—	—	—	—	—	—	—	—	—	—	—

등급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산책로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소로	신설	5	74.0	289.0	-	-	-	-	-	-	5	74.0	289.0	-	-	-
산책로	신설	2	7.0	18.0	-	-	-	-	-	-	-	-	-	2	7.0	18.0

○ 도로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81.0	307.0			
소로	소 계			74.0	289.0			
	3	1	4.5	3.0	14.0	진입로	북서측경계	진입광장
	3	2	4.5	3.0	14.0	진입로	남동측경계	소로3-3
	3	3	4.5 ~ 2.0	24.0	85.0	연결로	소로3-5	산책로2
	3	4	4.0	23.0	92.0	연결로	진입광장	광장
	3	5	4.0	21.0	84.0	연결로	광장	소로3-3
산책로	소 계			7.0	18.0			
	-	1	3.0	4.0	12.0	연결로	광장	어린이놀이터
	-	2	2.0	3.0	6.0	연결로	소로3-3	광장

고성군 공고 제2024-1051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35)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27-15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35)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27-1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35)사업
- 명 칭: 토성도시계획도로(소2-35)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성군수
- 주 소: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라.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사 업 명	위 치		총결정 연장·폭(m)	기시공(m)	금회시공(m)	미시공(m)	최초결정일
	시점	종점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35)개설공사	청간리 산78-10	청간리 산83-3	L=277 B=8	-	L=277 B=8	-	2012. 7. 23.

※ 금회 사업면적: 3,069㎡(시설 내: 2,244 / 시설 외: 82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상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설 내	시설 외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계		15필지		27,595	2,244	825						
1	청간리	산83-3	철도	397	52	19	고 성 군	공				
2	청간리	227-15	임야	17,542	1,114	413	고 성 군	공				
3	청간리	산85	임야	1,190	321	82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8	조*식 외 1인				
4	청간리	산82	임야	1,968	236	40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10-47	최*근				
5	청간리	산82-2	임야	677	102	99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남길 7-7	이*미				
6	청간리	산82-1	임야	277	4	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김*민				
7	청간리	223-1	잡종지	538	5	8	속초시 만천5길 23	박*유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	
8	청간리	산82-3	도로	18	18	-	국토교통부	국				
9	청간리	산82-4	도로	35	2	2	국토교통부	국				
10	청간리	산78-14	도로	418	227	40	국토교통부	국				
11	청간리	산78-15	도로	301	10	5	국토교통부	국				
12	청간리	산78-10	도로	725	151	53	국토교통부	국				
13	청간리	산77	임야	2,336	-	17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25-1	김*남				
14	청간리	산78-12	도로	119	1	16	국토교통부	국				
15	청간리	산78-5	도로	1,054	1	17	국토교통부	국				

사. 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아.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장 소: 고성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 680-3435, 팩스680-3179)

양양군 공고 제2024-900호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양 양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 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산7-2번지 일원	○ 도로신설 - 연장 : 225m - 폭원 : 22m~26m	양양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 열람기간 : 2024. 9. 27. ~ 2024. 10. 15.(18일간)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9. 27. ~ 2024. 10. 15.(18일간)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033-670-2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주 소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5,433	4,035	－	－	
1	여운포리	1-1	임	28,631	45	(주)파라다이스호텔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중동)	
2	여운포리	3	답	1,417	773	김춘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996	
3	여운포리	3-1	철	170	118	양양군	－	
4	여운포리	산7-2	임	23,325	2,299	김정희	강릉시 포남동 919-25	27/80
						(주)파라다이스호텔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중동)	53/80
5	여운포리	산8-12	임	1,890	800	국토교통부	－	